#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172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1. 22.(금)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 의 안 목 록 〉 | 〈 발의 및 제출자 〉 |
|---|---|
|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성 주 군 수】 |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성 주 군 수】 |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구교강의원외6인】 |
|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구교강의원외6인】 |
|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이화숙의원외6인】 |
| 6.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김경호의원외6인】 |
| 7.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성우의원외6인】 |
| 8.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종식의원외6인】 |
| 9.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종식의원외6인】 |
| 10.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여노연의원외6인】 |
| 11.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12.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13.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성 주 군 수】 |
| 14.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15.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주 군 수】 |
| 16.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17.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18.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 주 군 수】 |

# 성 주 군 의 회

#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2) 주요내용

○ 예산규모 : 6,241억원

· 일반회계 : 5,670억원

· 특별회계 : 571억원

※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 3) 첨부서류

○ 2025년도 예산편성기준(기 제출)

○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2) 주요내용

○ 기금예산규모 : 17,900백만원

- 성주군인재육성기금 : 1,286백만원
-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 3,540백만원
- 성주군자활기금 : 903백만원
- 성주군식품진흥기금 : 183백만원
- 성주군옥외광고발전기금 : 43백만원
- 성주군재난관리기금 : 2,036백만원
- 성주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 9,233백만원
- 성주군고향사랑기금 : 676백만원

※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 3) 첨부서류

○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발의일자 : 2024. 11. .
발 의 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함.

## 2. 제안이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 참 고 관련근거

###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발의일자 : 2024. 11.
발 의 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제안이유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필요 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원수 : 7인 이내
나. 위 원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다. 임 기 :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5조,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참 고 관련근거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②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 발의일자 : 2024년 11월 일 |
|---|
| 발 의 자 :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 1. 주 문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가. 출석일자 : 2024. 11. 25. / 11. 26. (2일간)

나. 출석장소 :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다. 출석대상 : 성주군수, 관계 공무원

| 출석일시 | 출석대상 | 비 고 |
|---|---|---|
| 2024. 11. 25.(월) 10:50 | 군수,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
| 2024. 11. 26.(화) 10:30 | 관광과장, 산림축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 |

## 2. 제안이유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1조,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 참 고 관련근거

###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제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발의자 서명부

| 의 원 명 | 서명 및 날인 | 비 고 |
|---|---|---|
| 이 화 숙 | | |
| 구 교 강 | | |
| 김 경 호 | | |
| 김 성 우 | | |
| 김 종 식 | | |
| 여 노 연 | | |
| 장 익 봉 | | |

#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 | |
|---|---|
| 발의일자 : | 2024년 11월 일 |
| 발 의 자 : | 김경호,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 1.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역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종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바. 주변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3. 조 례 안 : 붙 임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
2.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마을회관이 포함된 지역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성주군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 중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담당부서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각 1인
4.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6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그 밖에 주민의 건의・요구사항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관련 선임 연구원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지원협의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원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에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담당부서 분임 재무관
2. 기금출납원: 담당부서 분임 지출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담당부서 분임 지출관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종류)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마을 발전기금 적립
2.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이 속한 읍·면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17조(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주변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소득 증대 사업
2. 지역경관 개선 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제19조(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그 밖에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2.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 고 관련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 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 발의일자 : 2024년 11월 일 |
|---|
| 발 의 자 : 김성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 1. 제정이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조 례 안 : 붙 임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성주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해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 | |
|---|---|
| 발의일자 : | 2024년 11월 일 |
| 발 의 자 : | 김종식, 이화숙, 구교강<br>김경호, 김성우, 여노연<br>장익봉 |

##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안 제5조제2항제4호)

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 주차요금 감면(안 제5조제2항제5호)

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제목 변경 (안 제19조)

마.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기준 명시 (안 제19조제1항제1호～제19조제1항제3호)

## 3. 조 례 안 : 붙 임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주차장법」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의 소유차량으로”를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서”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5.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4.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5.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1인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감면 사유 대상자 본인의 소유차량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둥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9조의 제목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br>----------<br>----------<br>----------.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단서 신설> | 3. ----------<br>----------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br>----------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차량에 한한다. |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상이 1급 내지 6급)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증명서 제시)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 <신 설> | 5.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 ②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② ----------<br>----------<br>----------<br>-----. |
| 1.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의 상이등 |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

| | |
|---|---|
| 급을 받은 전상·공상군경해당자 제외) 및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와 동반한 일반차량(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 따라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개정 2012. 4. 20, 2016.11.10.》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설 2012. 4. 20, 개정 2016.11.10.》 |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 <신 설> | 4.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 <신 설> | 5. 관내 주민등록을 둔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1인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 <신 설>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감면 사유 대상자 본인의 소유차량으로 한정한다. |

| | |
|---|---|
| <신 설> | ④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
| 제19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되는 대수(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9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 또는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신 설> |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크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

| | |
|---|---|
| 는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마감하고 평탄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br>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br>2.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br>3.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 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 <삭 제> |

**참 고** **관련근거**

##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삭제 <1999. 2. 8.>

④ 삭제 <1999. 2. 8.>

⑤ 삭제 <1999. 2. 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발의일자 : 2024년 11월 일
발 의 자 : 김종식,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 1. 제정이유

성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혁신지원센터 조례의 목적, 위치, 기능(안 제1조～제3조)

나. 시설의 운영지원, 사용, 사용료 감면, 관리·운영(안 제4조～제6조)

다.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및 준용(안 제7조～제8조)

## 3. 조 례 안 : 붙 임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3길 76-8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3. 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기능
4.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운영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센터 사용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련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 제공,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화)**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

·다목·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법 제44조제1항에서“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
|---|---|

| | |
|---|---|
| 발의일자 : | 2024년 11월 일 |
| 발 의 자 : | 여노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장익봉 |

## 1. 제정이유

성주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업무관장 및 향우회의 권리, 책무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출향인 등에 대한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3. 조 례 안 : 붙 임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다.

제4조(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주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향우회의 책무) 향우회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 등 문화・체육행사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1. 개정이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총괄

- 현행 :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 변경 :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나. 과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3조)

- 신설(1): 경제교통과
- 분리(1): 산림축산과→산림과, 축산과
- 폐지(1): 새마을교통과
- 명칭변경(4) : 자치행정과→총무새마을과, 미래전략과→미래전략실
  기업경제과→기업지원과, 허가과→건축허가과

다. 분장사무 조정 주요내용 (안 제4조 및 제14조)

| | | |
|---|---|---|
| - 자치행정과 | 교육업무 | → 미래전략실 |
| | 정보통신업무 | → 경제교통과 |
| - 재무과 | 공무원 급여 | → 총무새마을과 |
| - 미래전략과 | 농촌개발,공간개발업무 | → 도시계획과 |
| | 역세권개발업무 | → 도시계획과 |
| | 청년 외국인 지원 신설 | → 미래전략실 |
| - 환경과 | 생태하천복원사업 | → 건설과 |
| | 가축분뇨 지도단속 | → 축산과 |
| - 산림축산과 | 축산, 축산방역업무 | → 축산과 |
| - 기업경제과 | 지역경제업무 | → 경제교통과 |
| | 에너지업무 | → 경제교통과 |
| - 도시계획과 | 공공임대주택 업무 | → 건축허가과 |
| | 공단조성업무 | → 기업지원과 |
| | 건축안전 관리 업무 | → 안전과 |
| | 경관,옥외광고물,공사감독 | → 건축허가과 |
| - 새마을교통과 | 단체관리,자원봉사 | → 총무새마을과 |
| | 행락업무 | → 안전과 |
| | 환경청결운동,깨끗한성주 | → 환경과 |
| | 교통행정,교통지도 | → 경제교통과 |
| - 허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 → 상하수도사업소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자치행정과-21463(2024.11.1.)호)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2024. 11. 1. ~ 11. 5.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를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로, “산림축산과, 기업경제과, 도시계획과, 새마을교통과, 허가과”를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를 “미래전략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전·의식 및 행사, 교류업무”를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 정책 및 저출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지원, 평생교육, 공립교육원 지원 등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4. 청년 및 외국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과의”를 “총무새마을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의전·의식 및 행사, 교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외수입 및 군금고”를 “서무, 보안, 공인, 기록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 복무 지도 및 감독

4. 공무원 인사·교육 및 조직관리

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단속

6. 여론 및 동향 관리

7.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 지방분권·주민자치 등에 관한 업무

8. 공무원 단체·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9. 공무원 급여 업무

10. 새마을 업무 및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사항

11. 국민운동 지원 및 바르게살기 운동 업무

12.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을 “재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을 “지방세의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세외수입 및 군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의 계약·지출·결산

7.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8.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9. 공유 재산 관리

10. 청사 및 관사 관리

11. 그 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제3호 중 “및 외국인주민”을 “발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청결운동 및 깨끗한 성주만들기 추진

제4조제1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촌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축산”을 “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 정책 업무

2. 축산 지원 업무

4.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

5.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업무

제4조제1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8호) 중 “산림 및 축산 업무”를 “축산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경제”를 “산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 육림 및 산림자원화 사업, 산림소득사업

2. 휴양림 및 야생화식물원 운영·관리

3.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4.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조경관리·조성에 관한 업무

제4조제13항제6호 중 “지역경제, 에너지, 일자리, 기업, 공장등록”을 “산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경제교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경제・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

2. 전기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3.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정보화 업무 및 행정・정보통신 관련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제1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교통”을 “기업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새마을 업무 및 자원봉사 전반”을 “기업지원, 투자유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관리

3.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 관리

5. 그 밖에 기업지원, 산업단지조성, 일자리,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제15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도시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계획 및 지역・도시개발, 농촌개발, 농촌활력에 관한 사항

제4조제16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을 “건축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중대재해대응”을 “공동주택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토지분할 업무
2.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3.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4. 국가유산 관련 허가 등 민원 처리
5. 도로, 구거, 하천 점용·허가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7.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
9. 건축물 관리점검 및 지도
10.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11.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공사 감독
12. 옥외광고물 및 경관업무

제4조제18항을 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8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업무

⑱ 안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2. 사회적 재난 대응

3. 민방위 관련 업무

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 지역내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진단

6. 자연재난 업무 및 재해 응급복구

7. 건축설계도서 기술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8. 행락질서 종합 추진

9. 중대재해대응 업무

제14조제1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사용승인 및 관리

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준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기구조정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기업경제과, 도시계획과, 새마을교통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 제3조(실·과의 설치) ---------- ----------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
| 제4조(분장사무) ① (생 략) | 제4조(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② 미래전략실---------- ---------. |
| 1. 의전·의식 및 행사,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 1.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 |
| 2. 서무, 보안, 공인,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인구 정책 및 저출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 3. 공무원 복무 지도 및 감독 | 3. 학교 교육 지원, 평생교육, 공립교육원 지원 등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 4. 공무원 인사·교육 및 조직관리 | 4. 청년 및 외국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 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단속 | <삭 제> |
| 6. 여론 및 동향 관리 | <삭 제> |
| 7.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 지방분권·주민자치 등에 관한 업무 | <삭 제> |

| | |
|---|---|
| 8. 학교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공립교육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삭 제> |
| 9. 공무원 단체·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 <삭 제> |
| 10. 전산시스템·정보화 업무 및 행정·정보통신 관련 사항 | <삭 제> |
| 11.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 제> |
| ③ 재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③ 총무새마을과 ----------. |
| 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 의전·의식 및 행사, 교류업무---------- |
| 2. 세외수입 및 군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 2. 서무, 보안, 공인, 기록물 ---------- |
| 3.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 3. 공무원 복무 지도 및 감독 |
| 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 4. 공무원 인사·교육 및 조직관리 |
| 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단속 |
| 6. 세출예산의 계약·지출·결산 | 6. 여론 및 동향 관리 |
| 7.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 7.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 지방분권·주민자치 등에 관한 업무 |
| 8.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8. 공무원 단체·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
| 9. 공유 재산 관리 | 9. 공무원 급여 업무 |

| | |
|---|---|
| 10. 청사 및 관사 관리 | 10. 새마을 업무 및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사항 |
| 11. 그 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 11. 국민운동 지원 및 바르게살기 운동 업무 |
| <신 설> | 12.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미래전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④ 재무----------. |
| 1.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 1. 지방세의 부과·징수---------- |
| 2.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 2. 세외수입 및 군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
|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3. 고향사랑기부제---------- |
| 4. 역세권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
| <신 설> | 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 <신 설> | 6. 세출예산의 계약·지출·결산 |
| <신 설> | 7. 물품출납 및 보관처분 |
| <신 설> | 8.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 <신 설> | 9. 공유 재산 관리 |
| <신 설> | 10. 청사 및 관사 관리 |
| <신 설> | 11. 그 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
| ⑤ 민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⑤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여권 및 외국인주민에 관한 사항 | 3. --- 발급 신청---------- |
| 4. ~ 10. (생 략) | 4. ~ 10. (현행과 같음) |
| ⑥ ~ ⑨ (생 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⑩ 환경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⑩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업무 | 9. 환경청결운동 및 깨끗한 성주 만들기 추진 |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⑪ 농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⑪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농촌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 ⑫ 산림축산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⑫ 축산----------. |
| 1. 조림, 육림 및 산림자원화 사업, 산림소득사업 | 1. 축산 정책 업무 |
| 2. 휴양림 및 야생화식물원 운영·관리 | 2. 축산 지원 업무 |
| 3.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 <삭 제> |
| 4.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4.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 |
| 5. 조경관리·조성에 관한 업무 | 5. 유기·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업무 |

| | |
|---|---|
| 6. 축산정책·지원 업무 | <삭 제> |
| 7. (생 략) | 3. (현행 제7호와 같음) |
| 8. 그 밖에 산림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 6. ---------- 축산 관련 업무--- |
| ⑬ 기업경제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⑬ 산림----------. |
| 1. 지역경제·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 | 1. 조림, 육림 및 산림자원화 사업, 산림소득사업 |
| 2. 전기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 2. 휴양림 및 야생화식물원 운영·관리 |
| 3.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3.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
| 4. 기업지원,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 4.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 5.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 관리 | 5. 조경관리·조성에 관한 업무 |
| 6. 그 밖에 지역경제, 에너지, 일자리, 기업, 공장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 6. ----- 산림 ---------- |
| ⑭ 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⑭ 경제교통----------. |
| 1.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1. 지역경제·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업무 |
| 2.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 2. 전기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
| 3. 광고물 관리 업무 | 3.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
|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4. 전산시스템·정보화 업무 및 |

| | |
|---|---|
| | 행정·정보통신 관련 사항 |
| 5.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관리 | 5. 그 밖에 지역경제,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
| 6. 건축설계도서 기술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삭 제> |
| 7. 군발주 공공 건축물 공사 감독 및 창의문화센터 관리 | <삭 제> |
| 8. 그 밖에 도시계획 및 지역·도시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 ⑮ 새마을교통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⑮ 기업지원----------. |
| 1. 새마을 업무 및 자원봉사 전반에 관한 사항 | 1. 기업지원, 투자유치 업무---------- |
| 2. 국민운동 지원 및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 2.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관리 |
| 3. 환경청결 운동 및 행락질서 종합 추진 | 3.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 4. 깨끗한 성주만들기 추진 | 4.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 관리 |
| 5.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새마을, 클린성주, 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 ⑯ 허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⑯ 도시계획----------. |
|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 1.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계획 |

| | |
|---|---|
| 토지분할 업무 |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 2.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 2. 도시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
| 3.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 3.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
|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사용승인 및 관리 | 4. 농촌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 5.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준공 | 5.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
| 6. 국가유산 관련 허가 등 민원처리 | 6. 그 밖에 도시계획 및 지역·도시개발, 농촌개발, 농촌활력에 관한 사항 |
| 7. 도로, 구거, 하천 점용·허가 | <삭 제> |
| 8.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 <삭 제> |
| 9.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 | <삭 제> |
| 10. 공동주택 관리 업무 | <삭 제> |
| 11. 건축물 관리점검 및 지도 | <삭 제> |
| ⑰ 안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⑰ 건축허가----------. |
| 1.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토지분할 업무 |
| 2. 사회적 재난 대응 | 2.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
| 3. 민방위 관련 업무 | 3.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
| 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4. 국가유산 관련 허가 등 민원처리 |
| 5. 지역내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진단 | 5. 도로, 구거, 하천 점용·허가 |

| | |
|---|---|
| <신 설> |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
| 7. 자연재난 업무 및 재해 응급복구 | 7.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 |
| 8. 중대재해대응 업무 | 8. 공동주택 관리 -- |
| <신 설> | 9. 건축물 관리점검 및 지도 |
| <신 설> | 10. 주택건설 및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
| <신 설> | 11.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공사 감독 |
| <신 설> | 12. 옥외광고물 및 경관업무 |
| <신 설> | ⑱ 안전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 | 1.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
| | 2. 사회적 재난 대응 |
| | 3. 민방위 관련 업무 |
| | 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 | 5. 지역내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진단 |
| | 6. 자연재난 업무 및 재해 응급복구 |
| | 7. 건축설계도서 기술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 | 8. 행락질서 종합 추진 |
| | 9. 중대재해대응 업무 |
| ⑱ 건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⑲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
|---|---|
| <신 설> | 6.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업무 |
| 6.·7. (생 략) |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4조(소관사무) ----------. |
| 1. 상하수도사업소 | 1. ---------- |
| 가. ~ 차. (생 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사용승인 및 관리 |
| <신 설> | 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준공 |
| 카.·타. (생 략) | 파.·하. (현행 카목 및 타목과 같음)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 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예상액은 없음

##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1. 개정이유

가.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나. 의회 전문위원 5급→6급 급수 조정 및 팀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안 제3조2항 관련 별표2)

-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
| 현행 | 1% 이내 | 5.2% 이내 | 25.2% 이내 | 29.2% 이내 | 24.9% 이내 | 13.7% 이상 | 0.8% 이내 |
| 개편 | 0.8% 이내 | 5.0% 이내 | 25.1% 이내 | 29.2% 이내 | 26.0% 이내 | 13.1% 이상 | 0.8% 이내 |

나.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 직급별·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 기관별 /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 |
|---|---|---|---|---|---|
| 총 계 | 699 | 366→367 | 15 | 101→100 | … |
| 일반직 | 662→663 | 358→360 | 15 | 72→71 | … |
| 5급 | 33 | 16→17 | 3→2 | 2 | … |
| 6급 이하 | 620→621 | 336→337 | 12→13 | 68→67 | … |
| ⋮ | ⋮ | ⋮ | ⋮ | ⋮ | … |
| 연구사 | 8→7 | 6→5 | - | 2 | |
| ⋮ | ⋮ | ⋮ | ⋮ | ⋮ |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자치행정과-20862(2024.10.25.)호)]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2024. 10. 29. ~ 11. 4.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
| 비율 | 0.8% 이내 | 5.0% 이내 | 25.1% 이내 | 29.2% 이내 | 26.0% 이내 | 13.1% 이상 | 0.8% 이내 |

2. 연구·지도직공무원

| 구분 | 연 구 직 | | 지 도 직 | |
|---|---|---|---|---|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율 | 3%이내 | 97%이상 | 12%이내 | 88%이상 |

3. 별정직공무원

| 구분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비율 | | | 100% 이내 | | |

[별표3]

#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 기관별 /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총 계** | **699** | **367** | **15** | **100** | **43** | **174** |
| **정무직 계** | 1 | 1 | 0 | 0 | 0 | 0 |
| 군 수 | 1 | 1 | | | | |
| **일반직 계** | **663** | **360** | **15** | **71** | **43** | **174** |
| 4급 | 2 | 1 | | 1 | | |
| 4~5급 | 3 | 2 | | | | 1 |
| 5급 | 33 | 17 | 2 | 2 | 3 | 9 |
| 6급상당 이하 소계 | 621 | 337 | 13 | 67 | 40 | 164 |
| 전문경력관 소계 | 4 | 3 | | 1 | | |
| **별정직 계** | **1** | **1** | **0** | **0** | **0** | **0** |
| 7급상당 이하 소계 | 1 | 1 | | | | |
| **연구직 계** | **7** | **5** | **0** | **2** | **0** | **0** |
| 연구관 | 0 | | | | | |
| 연구사 | 7 | 5 | | 2 | | |
| **지도직 계** | **27** | **0** | **0** | **27** | **0** | **0**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24 | | | 24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별표2]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
| 비율 | 1% 이내 | 5.2% 이내 | 25.2% 이내 | 29.2% 이내 | 24.9% 이내 | 13.7% 이상 | 0.8% 이내 |

2. 연구·지도직공무원

| 구분 | 연 구 직 | | 지 도 직 | |
|---|---|---|---|---|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율 | 3%이내 | 97%이상 | 12%이내 | 88%이상 |

3. 별정직공무원

| 구분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비율 | | | 100% 이내 | | |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총 계 | 699 | 366 | 15 | 101 | 43 | 174 |
| 정무직 계 | 1 | 1 | 0 | 0 | 0 | 0 |
| 군 수 | 1 | 1 | | | | |
| 일반직 계 | 662 | 358 | 15 | 72 | 43 | 174 |
| 4급 | 2 | 1 | | 1 | | |
| 4~5급 | 3 | 2 | | | | 1 |
| 5급 | 33 | 16 | 3 | 2 | 3 | 9 |
| 6급상당이하소계 | 620 | 336 | 12 | 68 | 40 | 164 |
| 전문경력관 소계 | 4 | 3 | | 1 | | |
| 별정직 계 | 1 | 1 | 0 | 0 | 0 | 0 |
| 7급상당이하소계 | 1 | 1 | | | | |
| 연구직 계 | 8 | 6 | 0 | 2 | 0 | 0 |
| 연구관 | 0 | | | | | |
| 연구사 | 8 | 6 | | 2 | | |
| 지도직 계 | 27 | 0 | 0 | 27 | 0 | 0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24 | | | 24 | | |

## 개 정 안

[별표2]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
| 비율 | 0.8% 이내 | 5.0% 이내 | 25.1% 이내 | 29.2% 이내 | 26.0% 이내 | 13.1% 이상 | 0.8% 이내 |

2. 연구·지도직공무원

| 구분 | 연 구 직 | | 지 도 직 | |
|---|---|---|---|---|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율 | 3%이내 | 97%이상 | 12%이내 | 88%이상 |

3. 별정직공무원

| 구분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비율 | | | 100% 이내 | | |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총 계 | 699 | 367 | 15 | 100 | 43 | 174 |
| 정무직 계 | 1 | 1 | 0 | 0 | 0 | 0 |
| 군 수 | 1 | 1 | | | | |
| 일반직 계 | 663 | 360 | 15 | 71 | 43 | 174 |
| 4급 | 2 | 1 | | 1 | | |
| 4~5급 | 3 | 2 | | | | 1 |
| 5급 | 33 | 17 | 2 | 2 | 3 | 9 |
| 6급상당이하소계 | 621 | 337 | 13 | 67 | 40 | 164 |
| 전문경력관 소계 | 4 | 3 | | 1 | | |
| 별정직 계 | 1 | 1 | 0 | 0 | 0 | 0 |
| 7급상당이하소계 | 1 | 1 | | | | |
| 연구직 계 | 7 | 5 | 0 | 2 | 0 | 0 |
| 연구관 | 0 | | | | | |
| 연구사 | 7 | 5 | | 2 | | |
| 지도직 계 | 27 | 0 | 0 | 27 | 0 | 0 |
| 지도관 | 3 | | | 3 | | |
| 지도사 | 24 | | | 24 | |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급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건비)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1. 제안 근거

가.「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다.「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2. 주요 사업

### 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국유지 취득

#### 1)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함.

#### 2) 추진계획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5. 01. : 감정평가 의뢰
- 2025. 02. :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00,000천원(군비 100% / 일반회계)

#### 4) 사업규모

- 취득(토지) :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 2,995㎡

##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천원)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적 | 가감정<br>평가액 | 비고 |
|---|---|---|---|---|---|
| | | | 2,995 | 198,508 | |
| 1 | 성주읍 삼산리 | 498-4 | 101 | 5,717 | |
| 2 | 성주읍 삼산리 | 713-21 | 159 | 8,999 | |
| 3 | 성주읍 삼산리 | 713-59 | 2,735 | 183,792 | |

##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 7)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4. 6.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를 득하였으나, 건축물 착공 전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하여 사업부지 내 편입 의견 회신(허가과)

· 2024. 9.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건설과)

· 2024. 9. : 국유재산 분할측량 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

· 2024. 11. : 2025년도 예산편성

· 2025. 1. : 감정평가 의뢰

· 2025. 2. : 토지매입(소유권 이전)완료 예정

## 8) 필요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국유지 매입 ·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국유지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 나.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 1) 사업목적

- 선남면 거점지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기능을 확충하고 농촌 중심지 거점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하고자 함.

### 2) 소요예산

- 총사업비 : 9,196,700천원(국비 70% 도비 7% 군비 21%/균특회계)
  · 토지 취득 : 1,953,900천원
  · 건물 신축 : 7,242,800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 산출기초(천원) | 금 액 | 비고 |
|---|---|---|---|---|
| 총 계 | | ①+②+③+④ | 7,242,800 | |
| 공사비 | | 소 계(①) | 6,398,600 | |
| | 건축 | 1,391㎡ x 4,600천원 | 6,398,600 | |
| 용역비 | | 소 계(②) | 406,300 | |
| | 세부설계비(건축) | 건축 공사비 x 4.31% | 275,800 | |
| | 추가설계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20,000 | |
| | | 장애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 10,000 | |
| | 공사감리비 | 건축 공사비 x 1.57% | 100,500 | |
| 기타 | | 소 계(③) | 437,900 | |
| | 예비비 | (공사비+용역비+보상비) x 5% | 437,900 | |

### 3) 사업규모

- 토지 취득 : 선남면 관화리 434-4번지 외 4필지 1,503㎡
- 건물 신축 : 3층, 1391㎡

### 4) 기준가격명세

(단위 : ㎡, 천원)

| 연번 | 구분 | 소재지 | 구조/용도 | 지적 | 기준가격 | 비고 |
|---|---|---|---|---|---|---|
| 1 | 토지 | 선남면 관화리 434-4 외 4필지 | 철근콘크리트/근린생활시설 | 1,503 | 310,267 | |
| | 건물 | | | 1,391 | 7,242,800 | 가감정 평가액 |

### 5) 계약방법

- 토지 협의취득

###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별고을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 1층 공동육아나눔공간 : 아이놀이공간, 독서놀이공간 등
  · 2층 주민커뮤니티공간 : 문화활동실, 외국인사랑방 등
  · 3층 청소년오픈캠퍼스 : 청소년문화실, 음악활동실, 북카페 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06. : 농촌협약 공모선정(농식품부)
  · 2023. 07. ~ 2024. 02.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검토·조정, 대상사업 확정
  · 2024. 04. : 농촌협약 체결(농식품부 ↔ 시·군간)
  · 2024. 05. : 선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24. 08. : 선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5. 05.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25. 06. : 토지 매입
  · 2025. 12. :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 2026. ~ 2027. :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착공 및 준공

### 7) 기대효과

- 핵심 중위거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중심지-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으로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민교육과 시설 운영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관리로 지역발전 도모

## 다.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 1) 사업목적

- 초전면 용봉리 일원에 축사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 해소로 지역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고자 함.

### 2) 추진계획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4. 12. : 중앙투자심사 실시
- 2025. 1. : 당초예산 편성, 감정평가 실시
- 2025. 3. : 보상금 통보

###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6,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 군비 45% / 일반회계)

### 4) 사업규모

- 취득(토지) : 초전면 용봉리 산5-2번지 외 329필지 934,920㎡

### 5) 기준가격 명세

(단위 : ㎡, 백만원)

| 연번 | 소재지 | 지적 | 기준가격 | 비고 |
|---|---|---|---|---|
| 1 | 초전면 용봉리 산5-2번지 외 329필지 | 934,920 | 5,866 | |

###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 7)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 2023. 11.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23. 11. ~ 12. : 주민 회의(1차~2차)

· 2024. 2. : 지장물건조서 작성

· 2024. 3. : 가감정 실시, 동의서 협의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4. 12. : 중앙투자심사 실시

· 2025. 1. : 당초예산 편성, 감정평가 실시

· 2025. 3. : 보상금 통보

## 8) 기대효과

가) 세종대왕자태실, 선석사, 인촌지 수변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사드배치로 인해 상처받고 분열된 지역 민심회복 및 침체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다) 성신농원의 대규모 축사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등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나 후적지 활용을 통하여 지역민의 거주환경 및 삶의 질 개선

# 2025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구 분 | | | 상반기 | | | 하반기 | | | 합 계 | | | 비고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 취득 | 계 | 부지 | 8 | 4,498 | 508,775 | 330 | 934,920 | 5,865,742 | 338 | 939,418 | 6,374,517 | |
| | | 건물 | 1 | 1,391 | 7,242,800 | | | | 1 | 1,391 | 7,242,800 | |
| | | 기타 | | | | | | | | | | |
| | 1. 매 입 | 부지 | 8 | 4,498 | 508,775 | 330 | 934,920 | 5,865,742 | 338 | 939,418 | 6,374,517 | |
| | | 건물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2. 기타 취득 | 부지 | | | | | | | | | | |
| | | 건물 | 1 | 1,391 | 7,242,800 | | | | 1 | 1,391 | 7,242,800 | |
| | | 기타 | | | | | | | | | | |
| 처분 | 계 | 부지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4. 매 각 | 부지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기타 | | | 해 | 당 | 없 | 음 | | | | |
| | 5. 양 여 | 부지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6. 교환으로 처분 | 부지 | | |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 | 계 | | | | | | | | | | |
| | | 부지 | | | | | | | | | | |
| | | 건물 | | | 해 | 당 | 없 | 음 | | | | |
| | | 기타 | | | | | | | | | | |

# 202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일련번호 | 재산표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 | 제방 | 성주읍 삼산리 498-4 | 101 | 5,717 | 2025년도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 매입 |
| 2 | 제방 | 성주읍 삼산리 713-21 | 159 | 8,999 | 2025년도 | | |
| 3 | 하천 | 성주읍 삼산리 713-59 | 2,735 | 183,792 | 2025년도 | | |
| 4 | 답 | 선남면 관화리 434-4 | 519 | 107,485 | 사업기간 중 (2025년) |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 | 매입 |
| 5 | 답 | 선남면 관화리 434-5 | 256 | 55,808 | 사업기간 중 (2025년) | | |
| 6 | 답 | 선남면 관화리 434-6 | 476 | 103,768 | 사업기간 중 (2025년) | | |
| 7 | 답 | 선남면 관화리 434-9 | 24 | 4,970 | 사업기간 중 (2025년) | | |
| 8 | 답 | 선남면 관화리 434-10 | 228 | 38,236 | 사업기간 중 (2025년) | | |
| 9 | 건물 | 선남면 관화리 434-4번지 외 4필지 | 1,391 | 7,242,800 | 2027년 | | 건물 신축 |
| 10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5-2 | 56,826 | 49,780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1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4 | 205 | 8,52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 | 전 | 초전면 용봉리 604 | 1,286 | 19,29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7 | 245 | 10,19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9 | 482 | 12,62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50 | 122 | 3,19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9 | 793 | 72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7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36 | 1,858 | 46,822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18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92-54 | 78 | 60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5-7 | 27,471 | 24,28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 | 전 | 초전면 용봉리 588-2 | 402 | 10,97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7 | 182 | 7,71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8 | 549 | 14,38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6 | 569 | 13,37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7 | 863 | 20,28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0 | 423 | 9,56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8 | 337 | 14,01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1 | 473 | 6,95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6 | 211 | 9,30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12 | 382 | 16,84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16 | 3,111 | 134,39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18 | 1,562 | 67,47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28 | 1,863 | 48,43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2-29 | 1,030 | 44,49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4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2-32 | 189 | 8,16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5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40 | 157 | 3,43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6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50 | 263 | 6,97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37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92-53 | 107 | 832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38 | 전 | 초전면 용봉리 595-4 | 670 | 16,88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9 | 전 | 초전면 용봉리 595-6 | 959 | 24,16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0 | 전 | 초전면 용봉리 582 | 813 | 18,37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 | 347 | 7,84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 | 86 | 1,94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7 | 195 | 4,05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50 | 463 | 19,26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5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57 | 569 | 23,67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58 | 271 | 11,27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7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59 | 60 | 2,49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0 | 215 | 8,94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4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2 | 149 | 6,19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5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1 | 321 | 13,35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5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8 | 398 | 5,85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52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151 | 115 | 4,35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53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152 | 233 | 10,15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5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71 | 352 | 5,31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55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82 | 14 | 58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5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6 | 235 | 9,77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57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7 | 40 | 1,6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5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9 | 172 | 7,15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5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8 | 93 | 3,86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00 | 159 | 6,61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6 | 691 | 10,15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5 | 577 | 8,48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3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2 | 17,058 | 30,87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5 | 245 | 10,19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4 | 793 | 17,36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6 | 답 | 초전면 용봉리 583-145 | 512 | 11,21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7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0 | 76,562 | 65,07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8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8 | 238,810 | 207,28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69 | 답 | 초전면 용봉리 561 | 369 | 5,16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70 | 답 | 초전면 용봉리 561-1 | 1,535 | 22,25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71 | 답 | 초전면 용봉리 561-3 | 2,076 | 29,0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72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04 | 393 | 16,34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7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57 | 1,909 | 29,20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7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58 | 257 | 3,59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7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0 | 882 | 12,96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76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1 | 2,000 | 29,40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77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4 | 533 | 7,835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78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77 | 60 | 91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79 | 답 | 초전면 용봉리 566 | 2,715 | 39,91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0 | 답 | 초전면 용봉리 566-1 | 161 | 2,36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7 | 60 | 88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2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1 | 420 | 17,47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0 | 50 | 2,08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05 | 155 | 6,44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4 | 476 | 6,99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03 | 337 | 14,01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7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9 | 1,067 | 44,38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8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 | 384 | 8,67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89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9 | 284 | 7,18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9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1 | 588 | 24,46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9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 | 202 | 4,56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92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8 | 1,536 | 66,35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9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 | 463 | 10,4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9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5 | 212 | 4,79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9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9 | 350 | 10,67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96 | 전 | 초전면 용봉리 589-6 | 43 | 1,31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97 | 답 | 초전면 용봉리 591 | 1,207 | 27,278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98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39 | 3,506 | 92,90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99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42 | 653 | 13,58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0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47 | 324 | 7,09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1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52 | 5,612 | 116,73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2 | 대 | 초전면 용봉리 592-55 | 154 | 6,40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3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56 | 790 | 19,90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4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57 | 98 | 2,47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5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58 | 259 | 6,8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6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92-59 | 428 | 3,33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7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60 | 164 | 3,59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8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61 | 1,484 | 33,83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09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62 | 1,463 | 33,35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10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63 | 758 | 16,60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1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5 | 30 | 1,24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12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21 | 949 | 35,58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1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26 | 146 | 6,07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1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27 | 149 | 6,19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15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2-7 | 1,058 | 46,12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1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24 | 265 | 11,02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17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37 | 384 | 5,261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11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6 | 112 | 4,65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1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01 | 460 | 19,13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07 | 549 | 22,83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8 | 97 | 2,54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2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153 | 164 | 1,27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54 | 920 | 13,52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2 | 667 | 9,33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5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181 | 9 | 12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6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183 | 137 | 1,06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7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90-14 | 924 | 12,65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8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90-22 | 123 | 95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29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92-30 | 221 | 3,02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0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4-6 | 198 | 29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1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4-7 | 1,289 | 2,72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2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4-8 | 9,917 | 21,22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3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4-11 | 99 | 18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4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4-14 | 82,711 | 111,66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5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4-15 | 595 | 89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6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5 | 9 | 22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37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22 | 122 | 4,575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13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28 | 1,379 | 57,36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39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29 | 2,396 | 32,82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0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155 | 410 | 3,19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1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167 | 121 | 94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9 | 119 | 3,63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3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187 | 186 | 1,44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88 | 295 | 7,4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5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3-189 | 61 | 83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6-1 | 468 | 23,49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7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9-5 | 410 | 5,61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8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589-7 | 7 | 9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49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34 | 2,459 | 106,22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0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4-4 | 3,254 | 4,88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1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11 | 63 | 1,58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2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15 | 208 | 5,80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3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17 | 2,374 | 18,47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4 | 하천 | 초전면 용봉리5 93-2 | 413 | 3,21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5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603-1 | 122 | 3,24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6 | 전 | 초전면 용봉리 596 | 3,308 | 87,99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57 | 전 | 초전면 용봉리 596-4 | 3,839 | 96,743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158 | 전 | 초전면 용봉리 596-7 | 3,367 | 95,28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5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51 | 182 | 7,57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0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0 | 697 | 10,6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1 | 1,379 | 19,99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3 | 119 | 1,82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4 | 1,058 | 16,18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6 | 982 | 14,43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5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76 | 8 | 33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6 | 답 | 초전면 용봉리 584 | 714 | 29,70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7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5 | 956 | 28,01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8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13 | 4,444 | 125,76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6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8 | 304 | 10,85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7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7 | 69 | 2,87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7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02 | 949 | 39,47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72 | 전 | 초전면 용봉리5 83-3 | 263 | 4,41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7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0 | 136 | 5,65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7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3 | 453 | 18,84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75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4 | 337 | 14,01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7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6 | 93 | 3,38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77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48 | 440 | 9,152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17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3 | 208 | 8,81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7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3 | 159 | 6,61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9 | 347 | 14,43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9 | 433 | 18,01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8 | 605 | 9,25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9 | 311 | 4,75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0 | 1,161 | 17,76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59 | 1,491 | 20,87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6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70 | 380 | 5,96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7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79 | 116 | 1,70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8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19 | 195 | 7,13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89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25 | 519 | 22,88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5 | 324 | 11,56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90 | 26 | 1,08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2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1 | 33 | 1,37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3 | 469 | 16,74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4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9 | 235 | 8,60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5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18 | 2,089 | 79,17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6 | 344 | 14,31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197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4 | 453 | 19,207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198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8 | 126 | 2,25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199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12 | 638 | 16,07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0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18 | 1,042 | 18,65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4 | 23 | 95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0 | 159 | 2,67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3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13 | 191 | 8,42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4 | 전 | 초전면 용봉리 590-20 | 159 | 4,85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5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21 | 193 | 8,51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0 | 182 | 7,57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7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1 | 76 | 3,16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2 | 83 | 3,45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4 | 328 | 13,64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0 | 전 | 초전면 용봉리 585 | 79 | 1,99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1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4 | 682 | 29,46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2 | 답 | 초전면 용봉리 590-5 | 101 | 2,75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3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39 | 8 | 28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2 | 284 | 10,7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5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23 | 949 | 39,47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25 | 129 | 5,36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217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56 | 1,550 | 23,715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218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84 | 80 | 1,17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19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9-3 | 245 | 10,58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0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9-4 | 259 | 11,42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6 | 331 | 13,77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2 | 답 | 초전면 용봉리 569 | 1,775 | 38,87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7 | 546 | 22,71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8 | 155 | 6,44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4 | 1,056 | 17,21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6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4-3 | 2,083 | 3,89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7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5-4 | 63,273 | 55,42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66 | 112 | 4,65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2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5 | 407 | 16,93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9 | 46 | 1,91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1 | 784 | 32,61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2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2 | 446 | 18,55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3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108 | 152 | 6,11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09 | 347 | 5,83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5 | 212 | 3,11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6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6 | 347 | 5,10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237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2 | 274 | 4,028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238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5 | 453 | 6,65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39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1 | 479 | 7,04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0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3 | 466 | 6,85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73 | 484 | 7,88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91 | 63 | 1,02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3 | 998 | 41,51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7 | 188 | 2,7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5 | 전 | 초전면 용봉리 579 | 225 | 5,69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6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 | 415 | 10,45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7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4 | 583 | 14,69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72 | 63 | 2,62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49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8 | 198 | 5,00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0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85 | 25 | 56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1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186 | 69 | 1,54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2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52 | 165 | 6,8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54 | 241 | 10,02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06 | 205 | 8,52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9-2 | 373 | 11,37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6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23 | 96 | 4,18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257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24 | 598 | 26,372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258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35 | 1,240 | 45,38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59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5 | 76 | 3,16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0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17 | 2,856 | 123,37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1 | 전 | 초전면 용봉리 590-30 | 223 | 5,37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2 | 전 | 초전면 용봉리 590-31 | 679 | 15,34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3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38 | 361 | 15,92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4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44 | 876 | 19,18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5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53 | 274 | 11,39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6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 | 94 | 3,77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7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2 | 306 | 12,05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8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8 | 215 | 9,28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69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40 | 11 | 44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0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2-1 | 473 | 17,31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1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2 | 13 | 32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2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3 | 165 | 6,8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3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5 | 456 | 18,97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2 | 109 | 4,62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5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66 | 679 | 29,94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6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74 | 468 | 21,06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277 | 대 | 초전면 용봉리 586 | 3,178 | 137,290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278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3 | 5,554 | 7,77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79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11-1 | 51,074 | 69,97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90 | 304 | 12,64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3 | 265 | 3,89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23 | 188 | 2,7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8 | 1,263 | 19,32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39 | 727 | 10,68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0 | 774 | 11,37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6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2 | 307 | 4,51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7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2 | 43 | 1,78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8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84 | 231 | 9,61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89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561-2 | 301 | 45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0 | 전 | 초전면 용봉리 590-1 | 82 | 2,07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1 | 답 | 초전면 용봉리 590-3 | 605 | 15,73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2 | 답 | 초전면 용봉리 590-7 | 336 | 12,398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3 | 전 | 초전면 용봉리 590-9 | 1,839 | 45,97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4 | 전 | 초전면 용봉리 590-10 | 1,572 | 40,87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5 | 전 | 초전면 용봉리 590-11 | 62 | 1,56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6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0-15 | 777 | 33,56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297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6 | 694 | 17,558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298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2-25 | 964 | 35,76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99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26 | 304 | 8,29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0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92-27 | 1,088 | 40,36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1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51 | 192 | 5,41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2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20 | 80,913 | 87,38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3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20-1 | 2,075 | 2,94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4 | 답 | 초전면 용봉리 560 | 251 | 3,69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5 | 답 | 초전면 용봉리 560-1 | 90 | 1,37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6 | 답 | 초전면 용봉리 562 | 488 | 7,07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7 | 답 | 초전면 용봉리 562-1 | 291 | 4,22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8 | 답 | 초전면 용봉리 562-2 | 1,538 | 22,30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09 | 답 | 초전면 용봉리 565 | 314 | 1,89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0 | 답 | 초전면 용봉리 565-1 | 751 | 4,52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1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2 | 1,220 | 19,88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2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47 | 10,273 | 151,01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63 | 450 | 6,61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4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72 | 796 | 11,70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75 | 758 | 11,44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6 | 답 | 초전면 용봉리 568 | 4,641 | 67,29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317 | 답 | 초전면 용봉리 568-1 | 582 | 8,439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318 | 잡종지 | 초전면 용봉리 583 | 294 | 11,26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19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20 | 721 | 18,89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0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38 | 182 | 7,57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1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0 | 456 | 18,97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2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48 | 212 | 8,81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3 | 전 | 초전면 용봉리 583-111 | 503 | 8,45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4 | 대 | 초전면 용봉리 583-178 | 67 | 2,78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5 | 전 | 초전면 용봉리 587 | 668 | 20,37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6 | 전 | 초전면 용봉리 588-1 | 173 | 4,08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7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21 | 735 | 13,15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8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22 | 195 | 3,491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29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23 | 645 | 14,577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0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24 | 1,988 | 44,92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1 | 전 | 초전면 용봉리 592-37 | 643 | 13,37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2 | 전 | 초전면 용봉리 600 | 5,690 | 85,919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3 | 창고용지 | 초전면 용봉리 604-1 | 337 | 6,100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4 | 창고용지 | 초전면 용봉리 604-2 | 55 | 946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5 | 도로 | 초전면 용봉리 604-4 | 519 | 1,832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6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5-8 | 988 | 1,294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337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5-9 | 11,580 | 14,938 | 사업기간 중 ('25~'29년)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 | 매입 |
| 338 | 임야 | 초전면 용봉리 산5-11 | 323 | 423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339 | 답 | 초전면 용봉리 564 | 2,241 | 9,995 | 사업기간 중 ('25~'29년) | | |

# 2025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일련번호 | 재산표시 | | | 매각대상수량 | 과표 또는 평가액 | 매각시기 | 매각사유 | 매수희망자 성명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일단의 수량 | | | | | | |
| | 해 | | 당 | | 없 | | 음 | | |

# 2025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일련번호 | | 재산표시 | | | | 교환대상 수량 | 추정 가액 | 교환 시기 | 교환 사유 | 교환 대상자 | 비고 |
|---|---|---|---|---|---|---|---|---|---|---|---|
| | | 구분 | 지목 | 소재지 | 일단의 수량 | | | | | | |
| | | 처분 취득 | | 해 | | 당 | | 없 | | 음 | |
| 계 | 부지 | 처분 취득 | | | | | | | | | |
| | 건물 | 처분 취득 | | | | | | | | | |
| | 기타 | 처분 취득 | | | | | | | | | |

# 2025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양여 대상 수량 | 과 표 또는 평가액 | 양여 시기 |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 양수자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일단의 수 량 | | | | | | |
| | | | 해 | 당 | 없 | 음 | | | |
| 계 | 부지<br>건물<br>기타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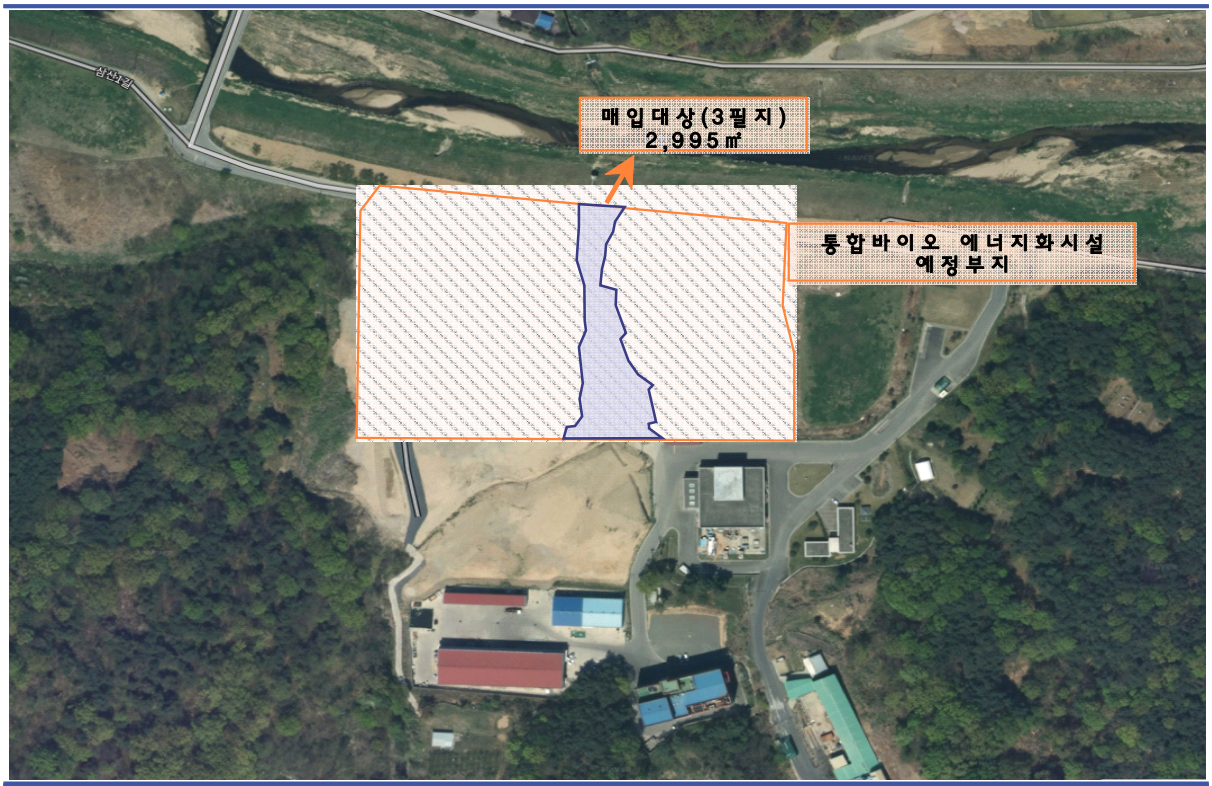
# 2025년도 기타처분 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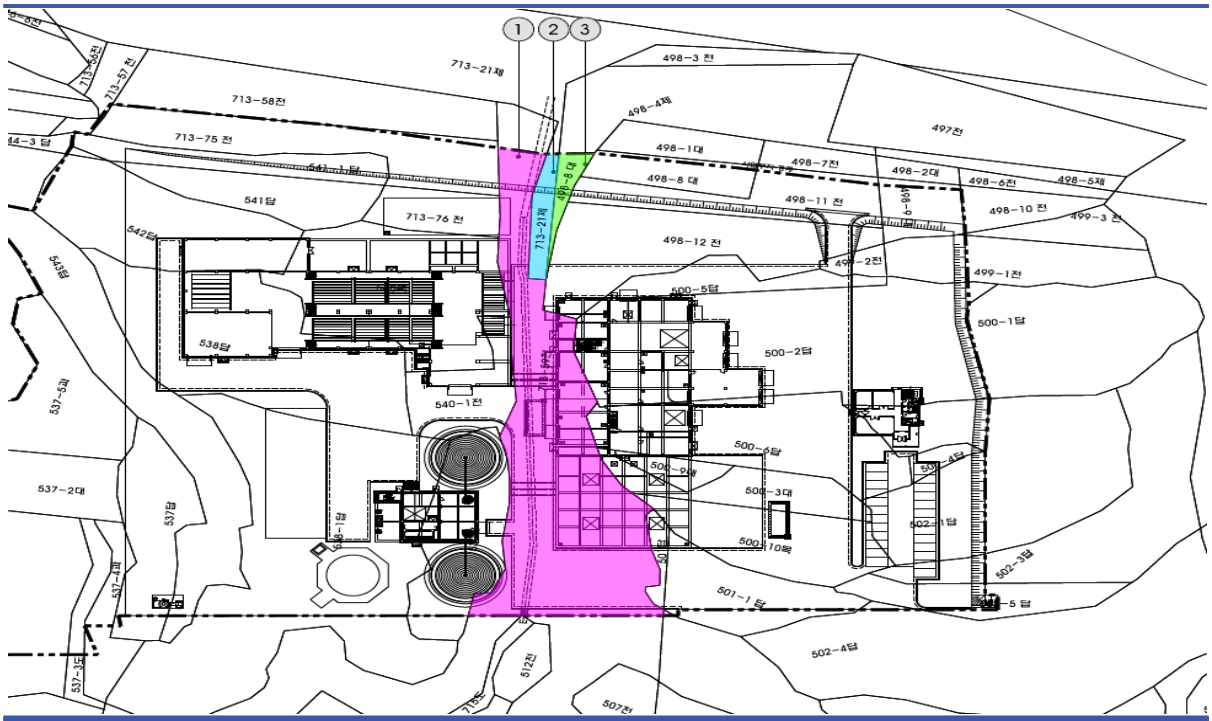
(단위 : ㎡, 천원)

| 일련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처분시기 | 처분사유 | 비고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 해 | | 당 | | 없 | | 음 |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부지 내 국유지 취득




조성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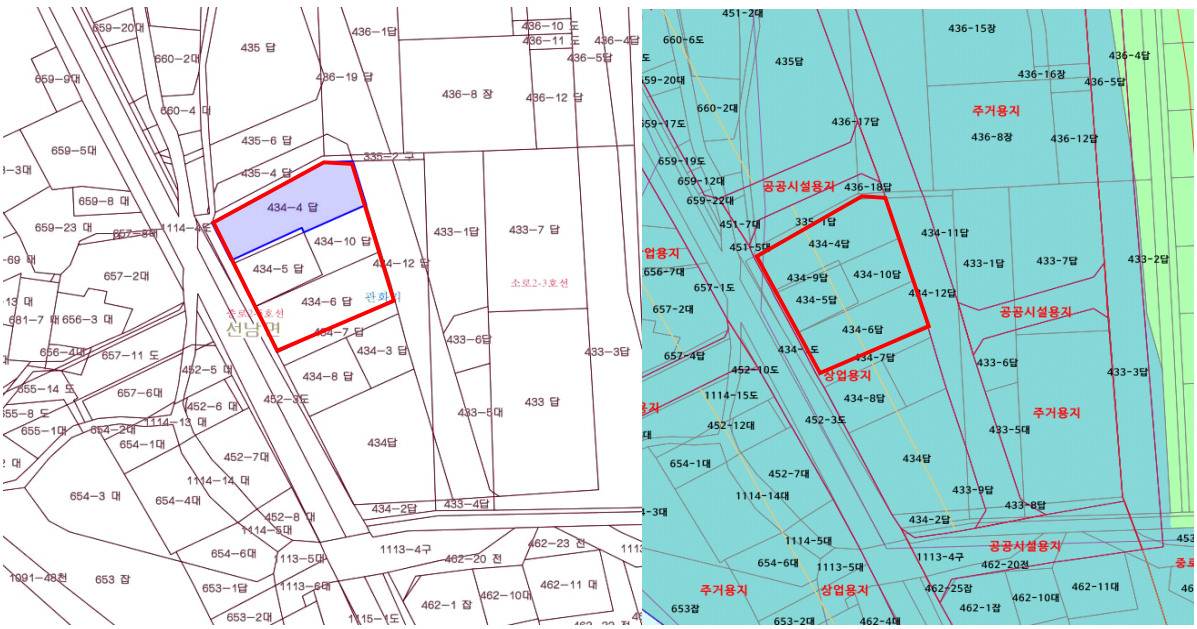



지적도

#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조성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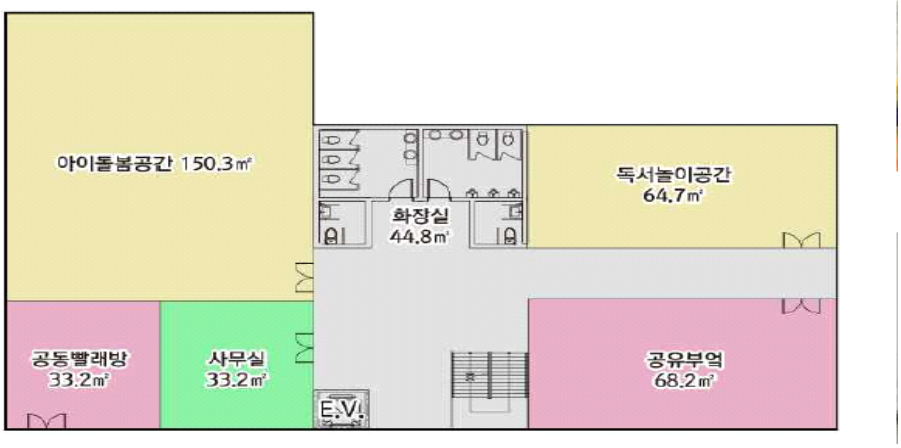



위 치 도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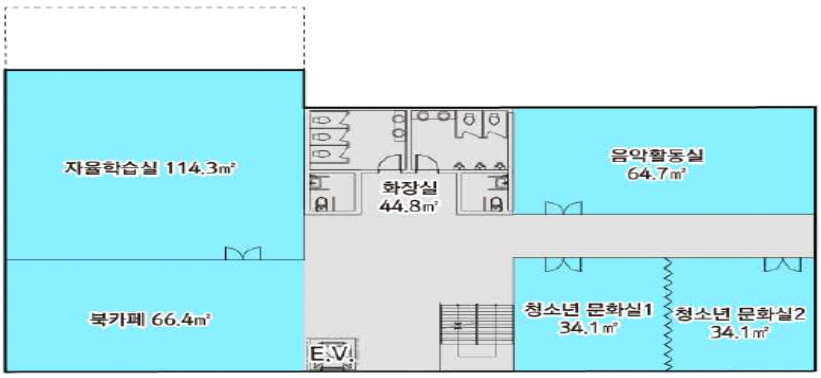
1층




2층




3층




**설계도(기본계획 수립중으로 세부 실 배치 등은 변경될수 있음)**

# 성신원 정비사업에 필요한 편입부지 매입




조성계획(안)



현장사진-부지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1. 개정이유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과 상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용시간 규정(안 제4조)

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기준 개정(안 제6조, 제8조)

다. 관리위탁 규정(안 제11조)

라.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제13조 ~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나. 입법예고 : 2024. 9. 13. ~ 10. 4.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2676(2024.9.4.)]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3347(2024.9.10.)]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역사충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충절공원”이란 역사충절공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역사충절공원 내에 조성된 한옥 체험시설(동재, 서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성주역사충절공원(이하 “역사충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28-6 일원으로 한다.

제4조(이용시간) ① 역사충절공원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역사충절공원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한옥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한옥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한옥 체험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④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료 등) ① 역사충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신용카드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이용료를 역사충절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 행사에 참가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체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역사충절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5.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시설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관리위탁) 군수는 역사충절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로 정하기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성주역사충절공원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 구 분 | | 기 준 | 사용료(원) | | 비고 |
|---|---|---|---|---|---|
| | | | 성수기 | 비수기 | |
| 동 재 | 54.17㎡형 (4인기준) | 1동/1일 | 150,000 | 100,000 | |
| 서 재 | 54.17㎡형 (4인기준) | 1동/1일 | 150,000 | 100,000 | |

비 고

1. “성수기”이란 7, 8월 및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
3. 동당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 10,000원을 징수한다. 단, 초과인원은 동당 2명 이내로 한다.

[별표 2]

# 이용료 환불 기준(제8조제2항 관련)

| 구 분 | 환불 기준 | | 비고 |
|---|---|---|---|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br>·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br>·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br>·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br>·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 · 이용료 전액 환급<br>·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br>·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br>· 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불<br>· 이용료의 80% 공제 후 환불 | |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한옥체험시설 이용(변경)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주 소 | | | |
| | 성명·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 | 직업·단체명 | | 전화번호 | |
| 내용 | 이용 기간 | | | |
| | 이용 목적 | | | |
| | 이용 인원 | | | |
| | 이 용 료 | 원 | |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체험시설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한옥체험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 | | |
|---|---|---|
| 허가번호 | | |
| 개인및단체명 | | |
| 허가 내역 | 이용기간 | |
| | 이용목적 | |
| | 허가조건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수할 것 |
| 이 용 료 | | 원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체험시설 시설의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직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이용료 면제 신청서

| | | | | | |
|---|---|---|---|---|---|
| 신청인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성 명 | | 직업(단체명) | | |
| 이용 시설명 | | | | | |
| 이 용 목 적 | | | | | |
| 이 용 기 간 | | | | | |
| 면 제 종 류 | | | | | |
| 면 제 사 유 | | | | |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주 군 수** 귀하

##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 4. 작성자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장

#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 1. 제정이유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항목 명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817(2024.10.10.)]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6633(2024.10.4.)]

라.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
4.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6.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② 군수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보전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군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금 산정)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9조(준수사항) 대중교통운영자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정산 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단일요금, 무료환승에 대한 결손액의 보전 규정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 · 구조 · 설비의 확충 · 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 · 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 · 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 · 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 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련법령 발췌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대중교통법)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0. 10. 20., 2022. 11. 15., 2024. 1. 9., 2024. 1. 3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단일요금제 실시, 광역환승 협약, 노인무료 승차에 따라 손실보전금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단일요금제 실시, 광역환승 협약 : 2024. 12. 14.부터 실시

**손실보상금 산출내역【16억원(단일 13억원 환승 3억원)】**

❍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검토용역 (최종보고서 2022.12. / 대한교통학회, 대구경북연구원)

| 구분 | 지자체의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억원/년) | | | | | 지자체의 환승 손실보전금(억원/년) | | | | |
|---|---|---|---|---|---|---|---|---|---|---|
| | 현재 유지 | 광역환승제 시행 | | | | 현재 유지 | 광역환승제 시행 | | | |
| | | 무료 환승제 | 정액 할인제 | 거리 비례제 | 무료+광역철도 정액할인제 | | 무료 환승제 | 정액 할인제 | 거리 비례제 | 무료+광역철도 정액할인제 |
| 영천 | 0 | 0 | 0 | 0 | 0 | 8 | 10 | 5 | 9 | 10(▲2) |
| 경산 | 0 | 0 | 0 | 0 | 0 | 65 | 84 | 42 | 79 | 81(▲16) |
| 김천 | 0 | 26 | 26 | 24 | 26 | 18 | 22 | 13 | 21 | 22(▲4) |
| 구미 | 0 | 55 | 55 | 52 | 55 | 43 | 71 | 39 | 68 | 62(▲19) |
| 칠곡 | 0 | 15 | 15 | 14 | 15 | 4 | 10 | 5 | 9 | 8(▲4) |
| 청도 | 0 | 2 | 2 | 1 | 2 | 0 | 1 | 0.5 | 1 | 1(▲1) |
| 고령 | 0 | 10 | 10 | 9 | 10 | 0 | 1 | 0.5 | 1 | 1(▲1) |
| 성주 | 0 | 13 | 13 | 12 | 13 | 1 | 3 | 2 | 3 | 3(▲2) |

❍ 단일요금 13억원

- 관내단일 : 3억원 ※「2023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용역」p76~77
  · 현행 : 10㎞이내 정액요금, 10㎞초과 구간요금
  · 조정 : 일반 1,500원, 좌석 2,000원 통일
- 관외단일 : 10억원 ※「2023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용역」p47~49
  · 예①북부) 4,200원→2,000원【2,200원×1491.8명×365일=**12억원**】
  · 예②서부) 8,700원→5,200원【3,500원×318.6명×365일= **4.1억원**】
  · 예③김천) 5,300원→1,500원【3,800원×49.6명×365일= **0.7억원**】
  · 예④왜관) 3,600원→1,500원【2,100원×62.2명×365일= **0.5억원**】

【주민혜택 **17.3억원**】

❍ 환승요금 3억원

- 성주 → 타 8개 지자체(대구,김천,구미,영천,경산,청도,고령,칠곡) 환승가능
  · 주 민) 환승 시 0원 : 요금통일로 차액없음(좌석·급행 별도)
  · 성주군) 경일교통(주)에 환승 손실보상금 지급

나. 노인무료 승차 : 2025. 7. 1.부터 실시

1)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전액 무료 ※ 대상인구 10,872명(26.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5년) | 2차년도 (2026년) | 3차년도 (2027년) | 4차년도 (2028년) | 5차년도 (2029년) | 6차년도 (2030년) | 합계 |
|---|---|---|---|---|---|---|---|---|
| 세입 | 소계(a) | 120 | 300 | 300 | 300 | 300 | 300 | **1,620** |
| 세출 | ○ 단일요금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1,300 | 7,800 |
| | ○ 광역환승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1,800 |
| | ○ 노인무료 | 4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5,400 |
| | 소계(b) | 2,000 | 2,600 | 2,600 | 2,600 | 2,600 | 2,600 | 15,000 |
| □ 총 비용(a-b) | | △1,880 | △2,300 | △2,300 | △2,300 | △2,300 | △2,300 | △13,38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 - |
| 도비 | 일반회계 | 120 | 300 | 300 | 300 | 300 | 300 | **1,620**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 - |
| 군비 | | 1,880 | 2,300 | 2,300 | 2,300 | 2,300 | 2,300 | 13,380 |
| 민간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합계 | | 2,000 | 2,600 | 2,600 | 2,600 | 2,600 | 2,600 | 15,000 |

5. 부대의견

· 단일요금제, 광역환승, 노인 무료승차 등 교통비 부담 완화로 인구 증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작성자 : 새마을교통과 교통행정팀장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1. 개정이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비 신설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회복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5조제1항제4호)

- 기간 확대 : 36개월(3년) → 72개월(6년)
- 지원금액 확대 : 37~72개월(3년) 첫째아 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첫 임신, 출산, 첫 돌맞이 축하금 지원 중단

나.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산정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실-11325(2024.09.26.)]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없음 [가족지원과-45728(2024.09.26.)]

마.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

바. 비용추계서 : 별첨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미만의 영아”를 “이내의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첫 임신·출산·첫 돌맞이 축하금 및 양육 지원금”을 “양육 지원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를 돕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주아기보험은”을 “성주아기보험 및 산후조리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2. 영아가 미혼부・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금액 등)”을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영유아 양육 지원금”을 “양육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씩 72회

나.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다. 셋째 자녀: 매월 5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라. 넷째 자녀 이상: 매월 7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후조리비: 10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의”를 “제5조에 따른”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신청인”을 “지원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 산후조리비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개정규정은 2025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고 2024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
|---|---|---|

| | | | | | |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 | | | | | 집전화 | |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 | 출산자와의 관계 | |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 | | | | | | |
|---|---|---|---|---|---|---|
| 출산자 (산모)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 | | | | | 집전화 | |
| |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 | | | |
| 출생자 |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 | | | |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 출산자와의 관계 | 출생 순위 |
|---|---|---|---|---|---|---|---|
| | 본인 | | | [ ]예 [ ]아니오 | | | |
| | 배우자 | | | [ ]예 [ ]아니오 | | | |
| | 자 | | | [ ]예 [ ]아니오 | | | |
| | 자 | | | [ ]예 [ ]아니오 | | | |
| | 자 | | | [ ]예 [ ]아니오 | | | |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출산 양육 지원 | |
|---|---|---|
| | |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 |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 | |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 | |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 | | □ 산후조리비 지원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 | | ※ 둘째 자녀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에 거주 |
| | |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 |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등 |

| 전국 공통 서비스 | 서비스명 | | 신청 구분 | |
|---|---|---|---|---|
| | 첫만남이용권 |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1. 국외출생 여부: [ ]예 [ ]아니오 |
| |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 ]부모급여(현금) | 2. 복수국적 여부: [ ]예 [ ]아니오 |
| |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
| | 아동수당 | | [ ]아동수당 (보호자명 : ) |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
| | 해산급여 |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
| | 전기료 경감 | | [ ]출산가구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 |
| | 다자녀 (3명이상) |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
| |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 |
| | 다자녀 (2명이상)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 |
| |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
| |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
| |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 |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 |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

(3쪽 중 2쪽)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 급여 계좌 | 성 명 | 출산자와의 관계 | 대상서비스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참고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br>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br>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br>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아동수당법」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해산급여 대상여부 |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장애인 여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3쪽 중 3쪽)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생년월일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
|---|---|---|---|---|---|---|
| 신청인<br>(대리신청인) | | 읍·면·동 | |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br>2. (생 략)<br>3.“출산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의 현금 등을 말하며 출산기념품, 첫 임신·출산·첫 돌맞이 축하금 및 양육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br>4.“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br>5. ~ 7. (생 략)<br><신 설> | 제2조 (정의) ----------.<br>1.---------- 이내의 영유아------.<br>2. (현행과 같음)<br>3. ---------- 양육 지원금 ----------.<br>4.----------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br>5. ~ 7. (현행과 같음)<br>8.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를 돕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 |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

| | |
|---|---|
| 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br>2. 영아가 미혼부·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 ② 성주아기보험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 ② 성주아기보험 및 산후조리비는 ----------. |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 ---------- ---------- 19세 ---------- -- ---------- ----- ----------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br>1. 영아가 미혼부·미혼모로부터 | <삭 제> |

| | |
|---|---|
|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영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
| 2. 부 또는 모가 직장, 그 밖에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 |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 <삭 제> |
| 제5조 (지원금액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 | 제5조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 ① ----------<br>----------<br>----------<br>----------. ----------<br>---------- |

| | |
|---|---|
| 각 차등 지원한다.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첫 임신 축하금: 10만원(1회에 한한다) | <삭 제> |
| 3. 출산 축하금: 3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 <삭 제> |
| 4. 영유아 양육 지원금 | 4. 양육 지원금 |
| 가.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씩 36회 | 가. ----------72회 |
| 나.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씩 36회 | 나. ----------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
| 다. 셋째 자녀: 매월 50만원씩 36회 | 다.----------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
| 라. 넷째 자녀 이상: 매월 70만원씩 36회 | 라. ----------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
| 5. 첫 돌맞이 축하금: 2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 <삭 제> |
| <신 설> | 6. 산후조리비: 10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지원금의 신청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 부모 또는 보호자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

| | |
|---|---|
| |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삭 제> |
| 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삭 제> |
| 다. 직장 및 생계 등의 사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 <삭 제> |
| 라.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소지 이장 확인서 | <삭 제> |
| 마. 그 밖에 성주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사유서 | <삭 제> |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 대상: 다음 각 목의 산후조리 영수증<br>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br>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br>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br>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br>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br>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 | |
|---|---|
| ② (생 략)<br>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첫 돌맞이 축하금의 경우는 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로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br>④ ~ ⑨ (생 략)<br>⑩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익월 14일 이내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br><신 설> | ② (현행과 같음)<br>③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br>④ ~ ⑨ (현행과 같음)<br>⑩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익월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br>⑪ 산후조리비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 제7조 (환수 및 중단 등) ① ~ ③ (생 략)<br><신 설> | 제7조 (환수 및 중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제5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

# □ 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 · 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조사 · 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 관련, 「성주군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간이 2배(36개월 → 72개월)로 확대(안 제5조제1항제4호)되고 산후조리비 신규 지원(안 제5조제1항제6호)으로 인해 개정 시 세출 순증가가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확대 : 150명

1) 개정 전 지원기간 및 예산액 : 36개월, 994백만원

2) 개정 후 지원기간 및 예산액 : 72개월, 1,534백만원

- 1~36회(3년) 월 지원금 : 기존 금액 유지

· 첫째아(10만원), 둘째아(20만원), 셋째아(50만원), 넷째아(70만원)

- 37~72회(3년) 월 지원금 : 첫째아 이상 10만원

나. 산후조리비 신규 지원 : 150명, 150백만원(출생아 1인당 100만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5년) | 2차년도 (2026년) | 3차년도 (2027년) | 4차년도 (2028년) | 5차년도 (2029년) | 6차년도 (2030년) | 합계 |
|---|---|---|---|---|---|---|---|---|
| 세입 | 소계(a) | - | - | - | - | - | - | - |
| 세출 | ○ 출산양육지원금 | 994 | 994 | 994 | 1,174 | 1,354 | 1,534 | 7,044 |
| | ○ 산후조리비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900 |
| | 소계(b) | 1,144 | 1,144 | 1,144 | 1,324 | 1,504 | 1,684 | 7,944 |
| □ 총 비용(a-b) | | -1,144 | -1,144 | -1,144 | -1,324 | -1,504 | -1,684 | -7,944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 |
| 도비 | - | - | - | - | - | - | - |
| 군비 | 1,144 | 1,144 | 1,144 | 1,324 | 1,504 | 1,684 | 7,944 |
| 합계 | 1,144 | 1,144 | 1,144 | 1,324 | 1,504 | 1,684 | 7,944 |

5. 부대의견

·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및 산후조리비 신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율 증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작성자 : 보건소 출산지원팀장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명, 천원)

| 구분 | | 인원 | 개정 전 | | | 개정 후 | | | | 비고 |
|---|---|---|---|---|---|---|---|---|---|---|
| | | | 금액 | 횟수 | 합계 | 금 액 1~36개월 | 금 액 37~72개월 | 횟수 | 합계 | |
| **예 산 액** | | | | | **993,600** | | | | **1,683,600** | |
| 산후조리비 | | 150 | - | - | - | 1,000 | | 1 | 150,000 | 신규 |
| 출산 양육 지원금 | 첫째아 | 75 | 100 | 36 | 270,000 | 100 | 100 | 72 | 540,000 | 확대 |
| | 둘째아 | 60 | 200 | | 432,000 | 200 | 100 | | 648,000 | |
| | 셋째아 | 12 | 500 | | 216,000 | 500 | 100 | | 259,200 | |
| | 넷째아 이상 | 3 | 700 | | 75,600 | 700 | 100 | | 86,400 | |

※ 축하금(1회) 지원 중단 : 첫임신(100천원), 출산(300천원), 첫돌(200천원)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br>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 1. 개정이유

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안 제10조, 별표1)

나. 운영자의 체육시설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배상 비율을 규정함(안 제14조)

다. 성주체육관을 건강문화캠퍼스로 명칭 변경(안 별표1, 별표3)

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 훈련시 사용료 면제 및「다자녀 가정」 기준 구체화(안 별표2)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기준(2명 이상)

마. 공공체육시설물 이관으로 인한 시설물 추가(안 별표3)

※ 용암 게이트볼장, 수륜 풋살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대관 취소 환불 수수료 100만원)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46059(2024. 9. 30.)]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909(2024. 10. 14.)]

마. 입법예고 : 2024. 10. 17. ~ 11. 6.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상행위”를 “상행위, 파크골프장 사용료”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부속시설, 광고물 또는 상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br>②·③ (생 략)<br>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생 략) | 제10조(사용료) ①----------상행위, 파크골프장 사용료 ----------.<br>②·③ (현행과 같음)<br>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

## 현 행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시설별 | | 기준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이외 | | 비고 |
|---|---|---|---|---|---|---|---|
| | |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 성주체육관 | | 주 간 | 35,000 | 60,000 | 100,000 | 125,000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
| | | 야 간 | 50,000 | 75,000 | 125,000 | 150,000 | |
| 성주별고을 체육관 **(실내체육관)** | | 주 간 | 70,000 | 120,000 | 200,000 | 250,000 | |
| | | 야 간 | 100,000 | 150,000 | 250,000 | 300,000 | |
|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 주 간 | 21,000 | 36,000 | 60,000 | 75,000 | 창의문화 |
| | | 야 간 | 30,000 | 45,000 | 75,000 | 90,000 | 교류센터 |
| 성주별고을 체육관 **(씨름장)** | | 주 간 | 10,000 | 20,000 | 50,000 | 70,000 |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
| | | 야 간 | 20,000 | 30,000 | 70,000 | 100,000 | |
| 성주 별고을 운동장 | 트 랙 | 오 전 | 20,000 | 30,000 | 40,000 | 60,000 | |
| | | 오 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 | 필 드 | 오 전 | 45,000 | 70,000 | 90,000 | 140,000 | |
| | | 오 후 | 55,000 | 80,000 | 110,000 | 160,000 | |
| 성주별고을 풋살장 | | 주 간 | 10,000 | 20,000 | - | - | 2시간/1면 |
| | | 야 간 | 20,000 | 30,000 | - | - |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 | 주 간 | 15,000 | 30,000 | 20,000 | 35,000 | 2시간/1면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
| 선남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벽진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성주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별고을 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용암 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수륜 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가천 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초전 파크골프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게이트볼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선남 강변 야구장 | 성인 | - | 50,000 | 100,000 | 100,000 | 200,000 | 2시간/1회 |
| | 리틀 | - | 30,000 | 50,000 | 70,000 | 140,000 | 2시간/1회 |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7:00까지로 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2. (생 략)**

**3. (생 략)**

## 개 정 안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시설별 | | 기준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이외 | | 비고 |
|---|---|---|---|---|---|---|---|
| | |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 건강문화캠퍼스 | | 주 간 | 35,000 | 60,000 | 100,000 | 125,000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
| | | 야 간 | 50,000 | 75,000 | 125,000 | 15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 | 주 간 | 70,000 | 120,000 | 200,000 | 250,000 | |
| | | 야 간 | 100,000 | 150,000 | 250,000 | 300,000 | |
|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 | 주 간 | 21,000 | 36,000 | 60,000 | 75,000 | |
| | | 야 간 | 30,000 | 45,000 | 75,000 | 9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 | 주 간 | 10,000 | 20,000 | 50,000 | 70,000 |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
| | | 야 간 | 20,000 | 30,000 | 70,000 | 100,000 | |
| 성주 별고을 운동장 | 트 랙 | 오 전 | 20,000 | 30,000 | 40,000 | 60,000 | |
| | | 오 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 | 필 드 | 오 전 | 45,000 | 70,000 | 90,000 | 140,000 | |
| | | 오 후 | 55,000 | 80,000 | 110,000 | 160,000 | |
| 성주별고을 풋살장 | | 주 간 | 10,000 | 20,000 | - | - | 2시간/1면 |
| | | 야 간 | 20,000 | 30,000 | - | - |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 | 주 간 | 15,000 | 30,000 | 20,000 | 35,000 | 2시간/1면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
| 게이트볼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선남 강변 야구장 | 성인 | - | 50,000 | 100,000 | 100,000 | 200,000 | 2시간/1회 |
| | 리틀 | - | 30,000 | 50,000 | 70,000 | 140,000 | 2시간/1회 |

○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08:00~22:00로 하며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단 주간·야간으로 구분할 경우 주간은 08:00~17:00까지로 한다.
○ 4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시 시간 단위로 일할계산도 가능.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현 행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종 류 | | 단 위 | 요 금 | 비 고 |
|---|---|---|---|---|
| 성주별고을 체육관 | 전광판 | 1회 | 30,000 | 4시간/1회 |
| | 무대 조명시설 | 1회 | 30,000 | |
| 음향설비 | 음향시설 | 1회 | 25,000 | |
| | 마이크(2대/기본) | 1회 | 5,000 | |
| 냉·난방 | | 1회 | 50,000 | |
| 전기시설 | | 1회 | 30,000 | |
| ○ 그 밖의 청소료 | | 주최 측에서 부담<br>※고무매트 정리비용 포함 | | |

**5. (생 략)**

## 개 정 안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종 류 | | 단 위 | 요 금 | 비 고 |
|---|---|---|---|---|
| 성주별고을 체육관 | 전광판 | 시간당 | 10,000 | |
| | 무대 조명시설 | 시간당 | 10,000 | |
| 음향설비 | 음향시설 | 시간당 | 10,000 | |
| | 마이크(2대/기본) | 시간당 | | |
| 냉·난방 | | 시간당 | 15,000 | |
| 전기시설 | | 시간당 | 10,000 | |
| ○ 그 밖의 청소료 | | 주최 측에서 부담<br>※고무매트 정리비용 포함 | | |

**5. (현행과 같음)**

**6. 읍·면 파크골프장 사용료**

| 시 설 명 | 사용료(1일 기준) | | 비 고 |
|---|---|---|---|
| | 성주군민 | 성주군민 외 사용자 | |
| 선남생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 무료 | 무료<br>[예약홈페이지 예약 후 이용 가능<br>(오전 16명/오후 16명)] | 36홀 |
| 성주호 파크골프장 | | | 18홀 |
| 월항 파크골프장 | | | |
| 수륜 파크골프장 | | | |
| 성주생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 무료 | | 9홀 |
| 벽진생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 | | |
| 별고을 파크골프장 | | | |
| 용암 파크골프장 | | | |
| 가 천 파크골프장 | | | |
| 초 전 파크골프장 | | | |

[비고]
파크골프장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하며, 동절기(10월~2월)에는 09:00~18:00 하절기(5월~9월)에는 07:00~19:00로 정한다.

## 현 행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 구 분 | 대 상 | 감면 요율 |
|---|---|---|
|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
| 감경 |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 100분의 80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
|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
| |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 | 성주군 다자녀가정 | 100분의 50 |
| | 성주군민 | 100분의 30 |
| |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개 정 안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 구 분 | 대 상 | 감면 요율 |
|---|---|---|
|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
| |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 |
| 감경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80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
|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
| |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 | 성주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100분의 50 |
| | 성주군민 | 100분의 30 |
| |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현 행

[별표3]

**성주군 공공체육시설**(제2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기 능 |
|---|---|---|
| 성주별고을 체육공원 |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참 별 로 2 5 3 0 - 1 일 원 |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육상경기장, 풋살장 등 |
| 성주국민 체육센터 |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성 주 순 환 로 2 7 1 - 1 5 | 수영장, 체련단련장 |
| 성 주 체 육 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 실내체육관 |
| 국민체육 센 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97-2 일원 | 실내체육관 |
| 성주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 테니스장, 족구장, 정구장 등 |
| 선남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708-2, 관화리1091-16 일원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
| 벽진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 파크골프장 |
| 성 주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 일원 | 파크골프장 |
| 별 고 을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 일원 | 파크골프장 |
| 용 암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 파크골프장 |
| 수 륜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 파크골프장 |
| 가 천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 파크골프장 |
| 초 전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 파크골프장 |
| 선남강변 야 구 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 성인 및 리틀야구장 |
| 수 륜 게 이 트 볼 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81-1 일원 | 게이트볼장 |

## 개 정 안

[별표3]

**성주군 공공체육시설**(제2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기 능 |
|---|---|---|
| 성주별고을 체육공원 |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참 별 로 2 5 3 0 - 1 일 원 |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육상경기장, 풋살장 등 |
| 성주국민 체육센터 | 경 북 성 주 군 성 주 읍 성 주 순 환 로 2 7 1 - 1 5 | 수영장, 체련단련장 |
| 건강문화 캠퍼스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 실내체육관 |
| 국민체육 센 터 (창의문화 센 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 실내체육관 |
| 성주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 테니스장, 족구장, 정구장 등 |
| 선남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708-2, 관화리1091-16 일원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
| 벽진생활 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 파크골프장 |
| 성 주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 일원 | 파크골프장 |
| 별 고 을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 일원 | 파크골프장 |
| 용 암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 파크골프장 |
| 수 륜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 파크골프장 |
| 가 천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 파크골프장 |
| 초 전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 파크골프장 |
| 성 주 호 파 크 골 프 장 | 경북 성주군 금수강사면 후평리 880-3 | 파크골프장 |
| 선남강변 야 구 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 성인 및 리틀야구장 |

## 현 행

| 명 칭 | 위 치 | 기 능 |
|---|---|---|
| 대가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로 755-3 일원 | 게이트볼장 |
| 벽진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1400-75 일원 | 게이트볼장 |
| 초전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69 일원 | 게이트볼장 |

## 개 정 안

| 명 칭 | 위 치 | 기 능 |
|---|---|---|
| 수륜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81-1 일원 | 게이트볼장 |
| 대가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로 755-3 일원 | 게이트볼장 |
| 벽진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1400-75 일원 | 게이트볼장 |
| 초전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69 일원 | 게이트볼장 |
| 용암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274-23 일원 | 게이트볼장 |
| 수륜풋살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56-6 일원 | 풋살장 |

[별표1]

##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시 설 별 | | 기 준 | 체육경기 | | 체육경기 이외 | | 비 고 |
|---|---|---|---|---|---|---|---|
| | |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 건강문화캠퍼스 | | 주 간 | 35,000 | 60,000 | 100,000 | 125,000 | ※ 오전, 오후로 구분 시 주간금액의 1/2적용 |
| | | 야 간 | 50,000 | 75,000 | 125,000 | 15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실내체육관) | | 주 간 | 70,000 | 120,000 | 200,000 | 250,000 | |
| | | 야 간 | 100,000 | 150,000 | 250,000 | 300,000 | |
|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 | | 주 간 | 21,000 | 36,000 | 60,000 | 75,000 | |
| | | 야 간 | 30,000 | 45,000 | 75,000 | 90,000 | |
| 성주별고을체육관 (씨름장) | | 주 간 | 10,000 | 20,000 | 50,000 | 70,000 | ※ 타 시·군 전지훈련장으로 이용 시 금100,000원/1일적용 |
| | | 야 간 | 20,000 | 30,000 | 70,000 | 100,000 | |
| 성주 별고을 운동장 | 트 랙 | 오 전 | 20,000 | 30,000 | 40,000 | 60,000 | |
| | | 오 후 | 30,000 | 40,000 | 60,000 | 80,000 | |
| | 필 드 | 오 전 | 45,000 | 70,000 | 90,000 | 140,000 | |
| | | 오 후 | 55,000 | 80,000 | 110,000 | 160,000 | |
| 성주별고을풋살장 | | 주 간 | 10,000 | 20,000 | - | - | 2시간/1면 |
| | | 야 간 | 20,000 | 30,000 | - | - | |
| 성주생활체육공원 (테니스, 정구, 족구) | | 주 간 | 15,000 | 30,000 | 20,000 | 35,000 | 2시간/1면 ※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가산 |
| 게 이 트 볼 장 | | -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 선남 강변 야구장 | 성인 | - | 50,000 | 100,000 | 100,000 | 200,000 | 2시간/1회 |
| | 리틀 | - | 30,000 | 50,000 | 70,000 | 140,000 | 2시간/1회 |
| (현행과 같음) | | | | | | | |

### 2. 이용료 : 면제

### 3.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 | 텔 레 비 전 | | 라 디 오 | |
|---|---|---|---|---|---|---|
| | | | 국 내 | 국 외 | 국 내 | 국 외 |
| 중계 방송 | 생방송 | 체육경기 | 40,000 | 60,000 | 20,000 | 40,000 |
| | | 체육경기 이외 | 80,000 | 100,000 | 40,000 | 60,000 |
| | 녹화 또는 녹음 | 체육경기 | 20,000 | 30,000 | 10,000 | 20,000 |
| | | 체육경기 이외 | 40,000 | 50,000 | 20,000 | 30,000 |
|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 | | | | | |

## 4.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종 류 | | 단 위 | 요 금 | 비 고 |
|---|---|---|---|---|
| 성주별고을 체육관 | 전광판 | 시간당 | 10,000 | |
| | 무대 조명시설 | 시간당 | 10,000 | |
| 음향설비 | 음향시설 | 시간당 | 10,000 | |
| | 마이크(2대/기본) | | | |
| 냉·난방 | | 시간당 | 15,000 | |
| 전기시설 | | 시간당 | 10,000 | |
| ○ 그 밖의 청소료 | | 주최 측에서 부담 | ※ 고무매트 정리비용 포함 | |

##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광고 | 선전물 | ㎡/1일 | 10,000 | |
| |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 | 1일/1개 | 7,000 | |
|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 | | 주간 | 40,000 | 8시간/1일 ※ 초과요금 :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 | | 야간 | 60,000 | |
| ○ 사용자 주최 측의 홍보 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 | | | |

## 6. 읍·면 파크골프장 사용료(추가)

| 시 설 명 | 사용료(1일 기준) | | 비 고 |
|---|---|---|---|
| | 성주군민 | 성주군민 외 사용자 | |
| 선남생활체육공원<br>**(파크골프장,다목적구장)** | 무료 | 무료<br>[예약홈페이지 예약 후 이용 가능<br>(오전 16명/오후 16명)] | 36홀 |
| 성주호 파크골프장 | | | 18홀 |
| 월항 파크골프장 | | | |
| 수륜 파크골프장 | | | |
| 성주생활체육공원<br>**(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 무료 | | 9홀 |
| 벽진생활체육공원<br>**(파크골프장)** | | | |
| 별고을 파크골프장 | | | |
| 용암 파크골프장 | | | |
| 가천 파크골프장 | | | |
| 초전 파크골프장 | | | |

[비고]

파크골프장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하며, 동절기(10월~2월)에는 09:00~18:00, 하절기(5월~9월)에는 07:00~19:00로 정한다.

[별표2]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3조 관련)

| 구 분 | 대 상 | 감면 요율 |
|---|---|---|
|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
| |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대회일전 30일 이내) | |
| 감경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80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
|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
|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
| |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 | 성주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100분의 50 |
| | 성주군민 | 100분의 30 |
| | 성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 등 | |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전용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다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시 불필요)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3]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제2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기 능 |
|---|---|---|
| 성주별고을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1 일원 | 실내체육관, 씨름장, 축구·육상경기장, 풋살장 등 |
| 성주국민체육센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15 | 수영장, 체련단련장 |
| 건강문화캠퍼스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7 | 실내체육관 |
| 국민체육센터(창의문화센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7 | 실내체육관 |
| 성주생활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상성로 1399 | 테니스장, 족구장, 정구장 등 |
| 선남생활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708-2, 관화리1091-16 일원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 |
| 벽진생활체육공원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442-78 일원 | 파크골프장 |
| 성주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51-1 일원 | 파크골프장 |
| 별고을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 일원 | 파크골프장 |
| 용암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76-1 일원 | 파크골프장 |
| 수륜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657-1 일원 | 파크골프장 |
| 가천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812-11 일원 | 파크골프장 |
| 초전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775-9 일원 | 파크골프장 |
| **성주호파크골프장** |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후평리 880-3** | **파크골프장** |
| 선남강변야구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7-7 일원 | 성인 및 리틀야구장 |

| | | |
|---|---|---|
| 대가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로 755-3 일원 | 게이트볼장 |
| 수륜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81-1 일원 | 게이트볼장 |
| 벽진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1400-75 일원 | 게이트볼장 |
| 초전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769 일원 | 게이트볼장 |
| **용암게이트볼장** |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274-23 일원** | **게이트볼장** |
| **수륜풋살장** |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56-6 일원** | **풋살장** |

## 관련법령 발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용 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나. 이용 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br>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br>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br>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 2. 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용 개시일 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 | 나. 이용 개시일 이후 |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br>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br>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br>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발췌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56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o 계약해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br>·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
| 3) 신체상 피해발생 | o 배상액 배상 | |
|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
| - 이용개시일 이전 | o 반환금액 환급<br>·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br>*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 이용개시일 이후 | o 반환금액 환급 | |
|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frac{\text{이미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
|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frac{\text{이미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 |

##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 | |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br>- 이용개시일 이전 | o 반환금액 환급<br>·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이용개시일 이후 | o 반환금액 환급 | |
|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위약금 | |
|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frac{\text{이미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 |
| o 사은품 반환<br>-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br>·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br>·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br>·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br>-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br><br>o 체육시설업<br>-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br>o 레저용역업<br>-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br>o 할인회원권업<br>-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 | |

##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둘째아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4.8.>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대관 취소 환불 수수료 발생

※ 2025년 당초예산 100만원 편성 예정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대관 취소 환불 수수료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4.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진흥팀장

#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 제출일자 : 2024년 11월 일 |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 1. 제정이유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나. 체육센터 운영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라. 강사 등의 근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제24조~제26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10. 17. ~ 2024. 11. 06.

2)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기획예산실-11909(2024.10.14.)]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46060(2024.09.30.)]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108에 둔다.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며 정책방향에 따라 장애인 우선사용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2. 부대시설 : 다목적홀, 커뮤니티홀,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동아리

실, 주민휴게시설(북카페 등), 관리시설(기계 및 전기실, 방재실) 등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06:00 ~ 22:00
2. 토요일 06:00 ~ 18:00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일요일
4.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체육관 : 1일 1회 4시간(사용 10분 전 입장가능)
2. 다목적실·다목적홀·소체육관 : 1일 1회 3시간(사용 10분 전 입장가능)

제7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력단련실 및 체육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군수는 체력단련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술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의 연기) 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②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연기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등의 근무) ①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기타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위탁·임대 운영하는 경우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임대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반다비 체육센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5.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및 「성주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계법령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24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군의 승인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투자비는 사용료(임대료)와 상계차감 조치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후 투자시설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⑥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프로그램의 운영)**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입 총계

▶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료 : 191,528천원

▶ 전용사용료 : 36,400천원

○ 지출 총계

▶ 인건비 : 472,558천원

▶ 일반운영비 : 305,276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입 | ○ 대관 | 36 | 36 | 36 | 36 | 36 | 180 |
| | ○ 프로그램 | 191 | 191 | 191 | 191 | 191 | 955 |
| | 소계(a) | 227 | 227 | 227 | 227 | 227 | 1,135 |
| 세출 | ○ 인건비 | 473 | 473 | 473 | 473 | 473 | 2,365 |
| | ○ 운영비 등 | 305 | 305 | 305 | 305 | 305 | 1,525 |
| | 소계(b) | 778 | 778 | 778 | 778 | 778 | 3,890 |
| □ 총 비용(a-b) | | -551 | -551 | -551 | -551 | -551 | -2,755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군비 | 551 | 551 | 551 | 551 | 551 | 2,755 |

5. 부대의견 :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증진시키고자 함

6.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장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수입 총계

(단위 : 천원)

| 구 분 | | 예상수입액 | 비 고 |
|---|---|---|---|
| 문화프로그램 | 사물놀이 | 5,040 | 프로그램은 주민의견 수렴하여 변경 가능 |
| | 실용음악교실 | 16,800 | |
| | 댄스 | 31,500 | |
| | 사진/공예 | 16,800 | |
| | **소계** | **70,140** | |
| 체육프로그램 | 탁구 | 20,160 | |
| | 배드민턴 | 20,160 | |
| | 헬스(일일입장) | 6,476 | |
| | 헬스(1개월) | 74,592 | |
| | **소계** | **121,388** | |
| 대 관 | 다목적체육관 | 18,200 | |
| | 소체육관 | 18,200 | |
| | **소계** | **36,400** | |
| **합 계** | | **227,928** | |

2. 지출 총계

(단위 : 천원)

| 구 분 | | 금액 | 비 고 |
|---|---|---|---|
| 인 건 비 | 기간제 | 472,558 | |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105,204 | |
| | 공공운영비 | 200,072 | |
| | **소계** | **305,276** | |
| **합 계** | | **777,834** | |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11. 22.(금)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 의 안 목 록 〉 | 〈 발의 및 제출자 〉 |
|---|---|
| ○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김경호의원외6인】 |
| ○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성우의원외6인】 |
|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종식의원외6인】 |
|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종식의원외6인】 |
| ○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여노연의원외6인】 |
|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주 군 수】 |
| ○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역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마.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종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바. 주변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 지원 해야 할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정이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대원의 복리를 보장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실종자 수색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신속한 수색작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안 제5조제2항제4호)

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 주차요금 감면(안 제5조제2항제5호)

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제목 변경 (안 제19조)

마.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기준 명시 (안 제19조제1항제1호～제19조제1항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

나.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임산부,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 및 감면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부설주차장, 노상·노외 주차구획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제정이유

성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혁신지원센터 조례의 목적, 위치, 기능(안 제1조～제3조)

나. 시설의 운영지원, 사용, 사용료 감면, 관리·운영(안 제4조～제7조)

다. 위탁기간, 위탁의 취소, 감독(안 제8조～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특성화 산업 발굴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의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역할과 위탁 사항, 그리고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기업의 창업과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여 성주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1. 제정이유

성주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업무관장 및 향우회의 권리, 책무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출향인 등에 대한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3.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과 향우회 간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위해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 등 문화·체육 행사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총괄

- 현행 :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 변경 :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나. 과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3조)

- 신설(1): 경제교통과
- 분리(1): 산림축산과→산림과, 축산과
- 폐지(1): 새마을교통과
- 명칭변경(4) : 자치행정과→총무새마을과, 미래전략과→미래전략실
  기업경제과→기업지원과, 허가과→건축허가과

다. 분장사무 조정 주요내용 (안 제4조 및 제14조)

| | | |
|---|---|---|
| - 자치행정과 | 교육업무 | → 미래전략실 |
| | 정보통신업무 | → 경제교통과 |
| - 재무과 | 공무원 급여 | → 총무새마을과 |
| - 미래전략과 | 농촌개발,공간개발업무 | → 도시계획과 |
| | 역세권개발업무 | → 도시계획과 |
| | 청년 외국인 지원 신설 | → 미래전략실 |
| - 환경과 | 생태하천복원사업 | → 건설과 |
| | 가축분뇨 지도단속 | → 축산과 |
| - 산림축산과 | 축산, 축산방역업무 | → 축산과 |
| - 기업경제과 | 지역경제업무 | → 경제교통과 |
| | 에너지업무 | → 경제교통과 |
| - 도시계획과 | 공공임대주택 업무 | → 건축허가과 |
| | 공단조성업무 | → 기업지원과 |
| | 건축안전 관리 업무 | → 안전과 |
| | 경관,옥외광고물,공사감독 | → 건축허가과 |
| - 새마을교통과 | 단체관리,자원봉사 | → 총무새마을과 |
| | 행락업무 | → 안전과 |
| | 환경청결운동,깨끗한성주 | → 환경과 |
| | 교통행정,교통지도 | → 경제교통과 |
| - 허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 → 상하수도사업소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자치행정과-21463(2024.11.1.)호)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2024. 11. 1. ~ 11. 5.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신설, 분리·폐지, 명칭변경 등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에서 2실17과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반영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가.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나. 의회 전문위원 5급→6급 급수 조정 및 팀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안 제3조2항 관련 별표2)

-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
| 현행 | 1% 이내 | 5.2% 이내 | 25.2% 이내 | 29.2% 이내 | 24.9% 이내 | 13.7% 이상 | 0.8% 이내 |
| 개편 | 0.8% 이내 | 5.0% 이내 | 25.1% 이내 | 29.2% 이내 | 26.0% 이내 | 13.1% 이상 | 0.8% 이내 |

나.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 직급별·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 기관별 /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 |
|---|---|---|---|---|---|
| 총 계 | 699 | 366→367 | 15 | 101→100 | … |
| 일반직 | 662→663 | 358→360 | 15 | 72→71 | … |
| 5급 | 33 | 16→17 | 3→2 | 2 | … |
| 6급 이하 | 620→621 | 336→337 | 12→13 | 68→67 | … |
| ⋮ | ⋮ | ⋮ | ⋮ | ⋮ | … |
| 연구사 | 8→7 | 6→5 | - | 2 | |
| ⋮ | ⋮ | ⋮ | ⋮ | ⋮ |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자치행정과-20862(2024.10.25.)호)]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2024. 10. 29. ~ 11. 4.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전문위원 급수를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며, 팀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2025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 제안 근거

가.「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다.「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2. 주요 사업

### 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국유지 취득

#### 1)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함.

#### 2) 추진계획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5. 01. : 감정평가 의뢰
- 2025. 02. :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00,000천원(군비 100% / 일반회계)

#### 4) 사업규모

- 취득(토지) :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 2,995㎡

##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 천원)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적 | 가감정<br>평가액 | 비고 |
|---|---|---|---|---|---|
| | | | 2,995 | 198,508 | |
| 1 | 성주읍 삼산리 | 498-4 | 101 | 5,717 | |
| 2 | 성주읍 삼산리 | 713-21 | 159 | 8,999 | |
| 3 | 성주읍 삼산리 | 713-59 | 2,735 | 183,792 | |

##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 7)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4. 6.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를 득하였으나, 건축물 착공 전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하여 사업부지 내 편입 의견 회신(허가과)

· 2024. 9.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건설과)

· 2024. 9. : 국유재산 분할측량 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

· 2024. 11. : 2025년도 예산편성

· 2025. 1. : 감정평가 의뢰

· 2025. 2. : 토지매입(소유권 이전)완료 예정

## 8) 필요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국유지 매입 ·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국유지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 나.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 1) 사업목적

- 선남면 거점지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기능을 확충하고 농촌 중심지 거점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하고자 함.

### 2) 소요예산

- 총사업비 : 9,196,700천원(국비 70% 도비 7% 군비 21%/균특회계)
  · 토지 취득 : 1,953,900천원
  · 건물 신축 : 7,242,800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 산출기초(천원) | 금 액 | 비고 |
|---|---|---|---|---|
| 총 계 | | ①+②+③+④ | 7,242,800 | |
| 공사비 | | 소 계(①) | 6,398,600 | |
| | 건축 | 1,391㎡ x 4,600천원 | 6,398,600 | |
| 용역비 | | 소 계(②) | 406,300 | |
| | 세부설계비(건축) | 건축 공사비 x 4.31% | 275,800 | |
| | 추가설계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20,000 | |
| | | 장애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 10,000 | |
| | 공사감리비 | 건축 공사비 x 1.57% | 100,500 | |
| 기타 | | 소 계(③) | 437,900 | |
| | 예비비 | (공사비+용역비+보상비) x 5% | 437,900 | |

### 3) 사업규모

- 토지 취득 : 선남면 관화리 434-4번지 외 4필지 1,503㎡
- 건물 신축 : 3층, 1391㎡

### 4) 기준가격명세

(단위 : ㎡, 천원)

| 연번 | 구분 | 소재지 | 구조/용도 | 지적 | 기준가격 | 비고 |
|---|---|---|---|---|---|---|
| 1 | 토지 | 선남면 관화리 434-4 외 4필지 |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 1,503 | 310,267 | |
| | 건물 | | | 1,391 | 7,242,800 | 가감정 평가액 |

### 5) 계약방법

- 토지 협의취득

###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별고을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 1층 공동육아나눔공간 : 아이놀이공간, 독서놀이공간 등
  · 2층 주민커뮤니티공간 : 문화활동실, 외국인사랑방 등
  · 3층 청소년오픈캠퍼스 : 청소년문화실, 음악활동실, 북카페 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06. : 농촌협약 공모선정(농식품부)
  · 2023. 07. ~ 2024. 02.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검토·조정, 대상사업 확정
  · 2024. 04. : 농촌협약 체결(농식품부 ↔ 시·군간)
  · 2024. 05. : 선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24. 08. : 선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5. 05.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25. 06. : 토지 매입
  · 2025. 12. :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 2026. ~ 2027. :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착공 및 준공

### 7) 기대효과

- 핵심 중위거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중심지-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으로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민교육과 시설 운영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관리로 지역발전 도모

## 다.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 1) 사업목적

- 초전면 용봉리 일원에 축사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 해소로 지역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고자 함.

### 2) 추진계획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4. 12. : 중앙투자심사 실시
- 2025. 1. : 당초예산 편성, 감정평가 실시
- 2025. 3. : 보상금 통보

###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6,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 군비 45% / 일반회계)

### 4) 사업규모

- 취득(토지) : 초전면 용봉리 산5-2번지 외 329필지 934,920㎡

### 5) 기준가격 명세

(단위 : ㎡, 백만원)

| 연번 | 소재지 | 지적 | 기준가격 | 비고 |
|---|---|---|---|---|
| 1 | 초전면 용봉리 산5-2번지 외 329필지 | 934,920 | 5,866 | |

###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 7)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 2023. 11.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23. 11. ~ 12. : 주민 회의(1차~2차)

· 2024. 2. : 지장물건조서 작성

· 2024. 3. : 가감정 실시, 동의서 협의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4. 12. : 중앙투자심사 실시

· 2025. 1. : 당초예산 편성, 감정평가 실시

· 2025. 3. : 보상금 통보

### 8) 기대효과

가) 세종대왕자태실, 선석사, 인촌지 수변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사드배치로 인해 상처받고 분열된 지역 민심회복 및 침체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다) 성신농원의 대규모 축사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등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나 후적지 활용을 통하여 지역민의 거주환경 및 삶의 질 개선

##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국유지 취득 >**

○ 본 안건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2,99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비용은 2억원입니다.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

○ 본 안건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434-4 외 4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391㎡로 건물신축 비용 72억 4천 2백 8십만원과 토지 취득 비용 19억 5천 3백 9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91억 9천 6백 7십만원입니다.

○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 중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육 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

○ 본 안건은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 5-2번지 외 329필지에 축사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연생태환경을 복원을 위해 부지면적 934,92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비용은 360억원입니다.

○ 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용봉3리는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후적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과 상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용시간 규정(안 제4조)

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기준 개정(안 제6조, 제8조)

다. 관리위탁 규정(안 제11조)

라.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제13조 ~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나. 입법예고 : 2024. 9. 13. ~ 10. 4.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2676(2024.9.4.)호]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3347(2024.9.10.)호]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고,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이용시간,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기준,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정이유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항목 명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817(2024.10.10.)]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6633(2024.10.4.)]

라.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등에 재정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비 신설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회복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5조제1항제4호)

- 기간 확대 : 36개월(3년) → 72개월(6년)
- 지원금액 확대 : 37~72개월(3년) 첫째아 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첫 임신, 출산, 첫 돌맞이 축하금 지원 중단

나.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산정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실-11325(2024.09.26.)]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없음 [가족지원과-45728(2024.09.26.)]

마.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

바. 비용추계서 : 별첨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산양육지원금을 36개월에서 72개월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36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임산부의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안 제10조, 별표1)

나. 운영자의 체육시설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배상 비율을 규정함(안 제14조)

다. 성주체육관을 건강문화캠퍼스로 명칭 변경(안 별표1, 별표3)

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 훈련시 사용료 면제 및「다자녀 가정」 기준 구체화(안 별표2)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기준(2명 이상)

마. 공공체육시설물 이관으로 인한 시설물 추가(안 별표3)

※ 용암 게이트볼장, 수륜 풋살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대관 취소 환불 수수료 100만원)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46059(2024. 9. 30.)]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909(2024. 10. 14.)]

마. 입법예고 : 2024. 10. 17. ~ 11. 6.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료, 감면기준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 제정이유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나. 체육센터 운영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라. 강사 등의 근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제24조~제26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4 10. 17. ~ 2024. 11. 06.

2)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기획예산실-11909(2024.10.14.)]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46060(2024.09.30.)]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 의 건립에 따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운영 방향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 사회통합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